研究報告 133

農村工業斗 農工地區 開發의 效率的 2 推進方案

徐 鍾 赫(首席研究員)

李 桐 弱(責任研究員)

趙 赫 增(臨時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圆廊

研究報告 133

農村工業과 農工地區 開發의 效率的 引 推進方案

要 約

1. 農村工業開發의 實態와 問題

그동안 農漁村副業團地나 새마을工場 建設 및 기타 각종 地方工業團地 造成事業을 적극 추진한 결과 農村工場은 1970년의 7,839개 업체에서 1984년에는 10,712개 업체로 年平均 2.26%씩 증가하여 1984년 현재 전체 제조업부문 중에서 農村工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事業體數의 25.8%, 就業者數의 21.2%, 生產額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工業開發의 정도를 把握하기 위해 工業集積度를 분석한 결과, 大都市와 大規模工團이 造成된 일부 據點地域 및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공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지역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農村工業開發의 低調는 농촌지역의 社會間接資本과 金融機關의 未發達,技能人力 不足,지원행정기관과의 接近性 問題 등 전반적인 立地條件의 낙후성 이외에도 用地確保와 工場設置節次의 복잡성, 個別・自由立地工場에 대한 지원과 農村 商工行政機能의 미비 등 制度的인 요인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다.

특히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의해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農工地區開發事業의 경우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事業을 실시한

지 오래지 않아 推進體系, 規模決定과 위치선정, 附帶施設의 範圍, 業體의 誘致 및 事業性 檢討 등, 좀더 보완 발전시켜야 할 몇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공지구의 規模決定과 위치선정 및 技能人力 需給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政策果題로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2. 段工地區의 規模, 位置 및 技能人力 需給分析

당초 가정과는 달리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規模의 經濟는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더구나 집단화된 대규모 工業用地確保의 어려움과 종 업원들의 출퇴근 문제 등으로 인하여 2~3만평 규모의 농공지구를 市道當 2~3개소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공지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用地確保가 용이하고, 開發費가 적게 들며, 交通이 편리하고, 勞動力確保가 용이한 곳에 선정하고 있으나, 事業費와 관련해 보면 大都市나 農村中心都市에 인접할수록 用地買收 및 補償費가 커져 坪當 事業費를 높이기 때문에 이상의 조건을 갖춘 중심도시 인근지역이 선호되고 있었다.

한편 농촌지역 기능인력 수급분석 결과 入住業體當 平均 노동력 수요량인 105명 중 71.5%인 79명을 현지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供給原인 지역 주민중 취업대상인구(15~59세)의 21.0%나 就業意思를 밝히고 있어서, 절대량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들 취업 희망자의 대부분이 工場就業에 必要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技能訓練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3. 私村工獎開發政策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政策建議

(1) 工業立地의 중합개발이란 차원에서 工業開發에 관한 각종 制度整備와 空間的인 再配置計倒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현재 推進되고 있는 여러 가지 工業團地造成施策과 首都圈 및 大都市 工業의 地方分散施策 그리고 기타의 中小企業育成과 農村工業開發에 관련된 제도나 推進體系를 정비하고, 立地 차원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공업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 및

농촌지역의 공업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 (2) 工業再配置量 통한 지방 및 농촌공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불리한 工業立地條件에서 발생하는 不利益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 지역 立地條件에 대해 각종 지원혜택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물론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의해 상당히 정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농어촌부업단지, 새마을공장, 농산물 가공공장 및 기타의 자유입지한 공장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조정 상태로 남아 있다.
- (3) 농공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工業開發 程度別로 支援 혜택을 差等化함으로써 工業過密地域의 추가적인 공업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低開發 및 落後地域의 開發을 促進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工業集積度 分析結果를 기준으로 전국을 工業過密地域,工業開發地域,工業低開發地域 및工業落後地域으로 구분하고 工業過密地域은 농공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工業開發地域의 경우 비교적 혜택이 적은 特別隨時指定만 하고 그밖에 工業低開發 및 工業落後地域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
- (4) 농공지구 人住業體에 대한 원활한 노동력 공급과 지역 주민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技能訓練을 추진할必 要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就業希望者(특히,農家口員 중 轉業希望者)를 중심으로 職業訓練을 실시하되 많은 施設과 장기간의 訓練 을 요하는 高級技能人力은 專門職業訓練院에, 단순기능인력은 社內見習工 으로, 그밖의 중간기술인력은 道單位 農民訓練院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入住業體 선정시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높은 업 체를 우선 入住시키고, 이들 업체에 대해 住民就業義務比率을 지정하고 이 경우 적절한 社內訓練費補助나 稅制被免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마지막으로 市道行政部署에 기업측이 요구하는 人力과 지역주민들 중취업을 희망하는 人力을 상호 알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노동력수급 알 선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원활한 노동력수급과 보다 많은 주민의 농공지구 취업을 促進하는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圆廊

머 리 말

최근 政府는 第6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이 끝나는 1991년까지 총 150 個의 農工地區를 조성하는 長期農工地區開發構想을 밝힌 바 있다. 1983년말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이 제정·공포되면서 農漁村所得源開發軍業의 일환으로 農工地區開發에 착수하여 江原道 橫城郡을 비롯한 7 個郡에 農工地區를 조성·완료하였으며, '86년말 현재 31個 農工地區를 지정하고 적극적인 入住業體 誘致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바야흐로 본격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획기적인 政策構想과 그동안의 정부 및 관계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農工地區의 指定이나 造成·事後管理등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더 보완, 발전시켜야 할 政策課題들이 남아 있으며, 특히 農工地區開發을 농어민들의 所得增大와 직견시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就業擴大方案 모색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農工地區開發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本 硏究는 그동안의 農村工業開發 실태와 관련정책을 검토하고 農工地區開發 事業의 당면문제인 합리적인 位置決定 및 規模選擇方法과 농공지구에 대 한 地域住民의 就業擴大方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연구수행과정에서 農水產部를 비롯해 1984~86년에 지정된 28個 農工 地區開發 市郡 및 農業振興公社와 中小企業振興公團의 도움이 컸다. 특히 事例調査에 응답해 주신 入住業體 및 鎭川郡 住民들을 비롯해 市·郡 調査에 적극 협력해 주신 農水產部 農村所得課의 趙壹鎬 課長과 印得植 先生,住民調査를 지원해 주신 忠北 鎭川郡廳 殖產課 林基德 課長과 延珠喆 商工運輸係長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謝意를 表한다.

아울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연구를 담당해 준 筆者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결과가 農工地區開發 정책의 수립과 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탬이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담당자들의 의견이며 當 硏究院의 公式見解와 바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1986.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鎭

目 次

第1章 序 論	
1. 問題의 提起	1
2. 硏究內容	3
3. 硏究方法斗 範圍	3
** • • • • • • • • • • • • • • • • • •	
第2章 農村工業開發實態의 關聯政策의 檢討	
1. 農村工業開發 實態斗 問題	8
2. 地域別 工業開發集積度 分析	18
3. 農村工業開發政策의 推進實態의 問題	29
第3章 農工地區의 規模 및 位置 分析	
1. 農工地區의 規模 및 位置決定	48
2. 農工地區開發의 事業費用 分析	54
3. 農工地區의 位置 및 規模에 관한 意思分析	62
第4章 農村技能人力의 需給 分析과 住民 就業擴大 方案	
1. 農村勞動力의 需給分析	67
2. 農工地區에 대한 勞動力供給 可能性 分析	71
3. 地域住民들의 就業 擴大方案	86
•	
第5章 要約 및 政策建議	
1. 要 約	90
2. 政策建議	03

表 目 次

第1章		
表 1-1	硏究에 활용한 農村工業 關聯資料	4
表 1-2	調査對象業體 및 應答業體數	5
表 1-3	住民就業意思 調查對象部落 및 規模	7
第2章		
表 2-1	地域別 工業開發質態와 成長	11
表 2- 2	都市 및 農村地域의 工業開發 比較	12
表 2- 3	年度 및 地域別 工業團地 指定	13
表 2- 4	地域別 工業團地 造成 叟 分讓實態	14
表 2- 5	工業立地 規制實態	15
表 2- 6	工場設置에 필요한 節次, 期間 및 具備書類	15
表 2- 7	立地形態別 稅制支援 比較	17
表 2-8	市郡의 商工業務 擔當部署 및 職員數	18
表 2- 9	業體數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分布	21
表 2-10	面積세當 工業用地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分布	22
表 2-11	面積屬當 生產額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分布	23
表 2-12	人口 千名當 從業員數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分布	24
表 2-13	綜合指數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區分	25
表 2-14	工業開發 集積度에 의한 地域區分 結果	27
表 2-15	副業團地 育成施策의 發展	31
表 2-16	年度別 副業團地의 指定 및 資金支援	32
表 2-17	道別 및 業種別 副業團地의 運營實態	33

表 2-18	農漁村 副業闘地 育成事業의 成果	33
表 2-19	年度別 재마을 工場 指定·取消·및 殘存 實態	37
表 2-20	地域別 새마을 工場 指定 및 稼動 實態	38
表 2-21	業種別 새마을 工場 指定 및 稼動 實態	39
表 2-22	재마을 工場 建設事業의 推進成果	39
表 2-23	새마을 工場의 休業 事由	41
表 2-24	道別 農工地區 開發 實態	43
表 2-25	農工地區 入住業體의 業種別 分布	43
表 2-26	農工地區 入住業體의 事業形態別 分布	45
表 2-27	移轉 및 分工場의 人住前 事業地域	45
表 2-28	設問調査에 의한 農工地區 施策의 問題	46
第 3 章		
表 3-1	農工地區 指定對象 市郡 및 指定可能 面積	49
表 3 - 2	農工地區의 位置選定 基準	51
表 3 - 3	農工地區의 指定規模	52
表 3 - 4	農村中心地로부터 거리별 農工地區의 分布	53
表 3 - 5	農工地區의 規模에 따른 長短點	5 3
表 3-6	農工地區 造成費의 原價構成	55
表3-7	8개 農工地區의 坪當 事業費 比較	57
表3-8	서울로부터 거리별 農工地區 開發面積 및 坪當事業費	60
表 3 - 9	農村中心都市로부터 거리별 農工地區 開發面積 및	
	坪當 事業費	61
表 3-10	HERMAN THE AMERICAN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	62
	市郡의 現在 農工地區 위치선정 이유	63
表 3-11	市郡의 現在 農工地區 위치선정 이유	64
表 3-11表 3-12		

箑	A	音
202	w	묘

	表 4 - 1	農工地區 入住業體의 總雇傭 및 現地住民 雇傭計劃	68
	表 4 - 2	企業의 農家人員 雇傭에 대한 選好 與否	70
	麦4-3	農工地區로부터 거리별 就業意思	73
	表 4 - 4	家口主의 職業別 農工地區 就業意思	73
	表 4 - 5	生活水準別 農工地區 就業意思	74
	表 4 - 6	耕地規模別 農工地區 就業意思	74
	表 4 - 7	就業條件別 就業意思	75
	表 4 - 8	農工地區의 勞動力 需給推定(鎭川郡 事例)	76
	表 4 - 9	性別 및 婚因 狀態別 就業希望 業種	78
	表 4-10	年齡別 就業希望 業種	7 9
	表 4-11	職業別 就業希望 業種	79
	表 4-12	性別 및 婚因狀態別 就業希望 職種	80
	表 4-13	年齡別 就業希望 職種	80
	表 4-14	職業別 就業希望 職種	81
	表 4-15	職業別 希望就業 形態	82
	表 4-16	性別 및 婚因狀態別 希望就業 方法,	82
	表 4-17	性別 및 婚因狀態別 非就業希望 理由	83
	表 4-18	年齡別 非就業希望 理由	84
	表 4-19	現職業別 非就業 希望 理由	85
	表 4-20	農工地區 入住業體의 所要 機能人力의 種類와 規模 및	
		技術 習得期間	87
	表 4-21	農工地區 入住業體의 職業訓練 方法	88
	表 4-22	職業訓練機關 및 訓練實態	88
	表 4 - 23	農工地區 人住業體의 從業員 모집방법	89
鉀	5章		
	表 5 - 1	工業開發 程度別 農工地區 支援의 差等化 方案	94

圖目次

第1章		
圖 1-1	農工地區 就業意思調查 對象地域의 分布(鎮川郡)	6
第 2 章		
圖 2-1	農村工業 開發의 被及效果	9
圖 2-2	工業團地의 分布 實態	16
圖 2-3	工業集積度에 의한 地域 區分	28
圖 2-4	農工地區의 地域別 分布	44
第3章		
圖 3-1	地域別 農工地區의 坪當 事業費	57
圖 3-2	서울로부터 거리와 坪當 分讓價의 관계	61

•

圆廊

第1章

序論

1. 問題의 提起

1962 년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된 이래 대도시 및 일부 거첩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輸出主導型 工業開發政策의 추진은 우리 경제의 高度成長을 가능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間 및產業間 成長隔差를 심화시켜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함께 인구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전반에 결친 도시지역 집중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保護貿易制度의 완화에 따른 農產物輸入開放은 농산물가격지지에 의한 안정적인 농업소득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의 均衡開發과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農村工業開發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농촌공업이란 농촌이라 부를 수 있는 지역(일반적으로 郡)에 입지하고 있는 일체의 제조업을 뜻하며, 정부가 이들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부터 착수된 農漁村副業團地育成事業과 1973년부터 착수된 새마을工場建設事業이다. 그러나 이들 농촌공업개발사업은 충분한 사업성검토의 미비와 개별 자유입지, 경영능력의 미숙 등의 사업자체의 문제

와 함께 工業立地政策과 연계되지 못한 등의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法律 第 3689 號, 1983.12)」을 제정하고 農工地區를 중심으로 한 農村工業開發政策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84 년 후반부터 착수된 農工地區開發事業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企業들이 入住를 신청함에 따라 1986 년 말에는 32개 市郡에 34개 농 공지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워낙 사업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推進體系, 규모결정과 위치선정, 附帶施設의 범위,업체의 誘致 및 사업성검토,調査設計方法 등 좀더 보완·정비해야 할 몇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공지구의 규모결정과 위치선정 및技能人力의 需給과 住民就業 알선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현행 농공지구개발지침에 의하면 인구 20만 이하의 市(단경기도 및 세주도 제외)는 20만평까지, 郡은 10만평까지 農工地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開發이 보다 적은 社會的 費用의 投入으로 地域의 均衡開發과 農外所得의 擴大가 可能할 것인지등에 관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선 市郡內에서 小親模 多數地域을 개발하는 것과 大規模 小數地域을 개발하는 방식 중에서 어떠한 것이 보다 社會的으로 유리한가? 位置選定에서 과연 定住生活圈의 중심지에 개발하는 것이 유리한가? 또한 입주업체들의 현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주민들의 취업부진에 대한 불만을 여하히 조화시킴으로써 농공지구개발이 곧 농촌주민들의 취업기회확대 및 農外所得 증대와 직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工業立地條件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首都圈 및 大都市 인근지역에 입주 신청업체들이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농공지구 자체의 不均衡開發問題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이상의 당면문제들은 크게 農工地區의 地域間 均衡開發과, 규모 및 위 치와 관련된 기능인력의 需給 및 주민취업알선의 두가지 문제를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農村工業開發政策의 실태를

살펴보고 농광지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특히 농광지구개발의 당면문제가 되고 있는 규모결정과 위치선정 및 농촌지역 技能人力需給方案에 관한 검토를 통해 농촌공업과 농광지구개발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2. 研究内容

본연구에서는 農村工業과 農工地區開發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농촌공업개발의 실태와 關聯政策의 검토

둘째,農工地區開發의 현황과 문제

세째, 농공지구의 規模 및 位置에 대한 분석

네째, 농공지구의 技能人力需給과 지역주민의 就業擴大 방안

3. 研究方法과 範圍

본연구는 농촌공업 및 농공지구개발에 관련된 기존의 文獻 및 자료분석과 농공지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8개 市郡, 농공지구 입주신청업체 중 사업성 검토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206개 업체 및 충북 진천군의 27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事例分析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과활용은 다음과 같다.

가. 既存文獻 및 資料分析

농촌공업이나 농공지구개발사업 모두 사업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자료들이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商工部와 全國經濟人聯合會 등에서 발행한 工業立地 관련자료, 勞動部의 職業訓練資料 및 농공지구개발 市郡과 입주업체의 사업성검토를 담당하는 中小企業振興公園, 農漁村開發

資	料	源	資	料	名	資料의 活用
經 濟	企	創院	鑛工業센서스	原資料	(1970~84)	農村工業實態 및 市郡別 工業集 積度
商	エ	部	工場立地案內	(1986))	工業團地造成 實態
勞	動	部	職業訓練事業	現況(1986)	職業訓練機關 및 訓練實態
全 紹	Z 4	第 外	工業立地 및 정비 및 改善	配置關(1) 方案(1)	系 法律의 986)	工業立地 및 配置關係法 實態
中振公	·, ß	と 開公	農工地區 入住	主申請 吳)檢討資料	入住申請 및 檢討現況
農	振	公	農工地區 造成	戈事業費	資料	細部造成費 內譯
市		郡	農工地區 指定	包計劃書		指定 및 造成實態
農村工 센 타		入促進 日 本)	農工의 手引((1985)		日本의 農村工業導入과 관련된 政策

表 1-1 연구에 활용한 瓜村工機 脳聯資料

公社, 조사설계를 담당하는 農業振興公社 등의 농공지구 관련자료, 그리고 경제기획원의 鑛工業 센서스자료 등을 관계기관의 협조로 수집,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자료의 내역은 〈表 1-1〉과 같다.

い. 農工地區開發 市郡調査

農水產部 農業政策局과 공동으로 1986.9~86.11월에 걸쳐 시행한 市郡調査에는 농공지구 혹은 農工地區 豫定地區로 指定된 28개 市郡이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984년 9월에 1차 농공지구로 지정한 횡성,진천, 공주, 남원, 함평, 영천, 함양의 7개군과 1985년 9월에 2차로 선정한 農工地區豫定地區인 안성, 홍천, 고성(강원), 금산, 김제, 나주시, 장성, 안동, 상주시, 영주시, 합천, 창녕, 함안, 천원, 임실, 중원, 음성, 영동, 영압, 추성, 연기 등 21개 市郡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들 市郡에 대한 調査內容으로는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공업개발 및 농기계 보유실태, 교육기관 및 학생현황 등 시군의 概況과 농공지구 개발실태와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계획, 농공지구 추진체계 및 정책보완사항등이 포함되며 調査方法은 農水產部의 협조로 설문지를 유인 송부하여응답을 받는 우편조사방법을 택하였다.

다. 農工地區 入住業體調査

入住業體에 대한 意思調査는 1986년 9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검토에 적격관정을 받은 206개 업체에 대해 1986. 9 ~ 86.11의 기간동안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는데 이들 조사에 응답을 회신한 업체는 81개 社로 조사표 回收率은 39%였다.

입주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으로는 회사의 조직형태나 업종, 사업형태 기타 이전 및 入住動機, 대표자 人的事項 등 일반현황과 工場 건설계획, 필요노동력의 자격요건 및 조달계획, 기타 농공지구개발정책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으며 조사방법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조로입주업체의 주소를 파악하여 유인된 조사표를 발송, 회수하는 우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事業形	態別	調査對象(A)	應 答 (B)	應答率(B/A)
移轉	業 體	125 업체	48 업체	38.4 %
創 茅	连 體	63	21	33.3
分二	場	18	12	66.7
ā	t	206	81	39.3

表 1-2 調査對象業體 및 應答業體數

라. 住民就業 意思調査

農水產部의 협조하에 忠北 진천군청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역주민들의 農工地區 就業意思調査는 충북 진천군을 事例地域으로 선정하고 진천읍 신정리의 鎭川 農工地區를 중심으로 거리별로 3개 就業圈을 구분하여 각 기 90 戶씩(부락당 30 戶) 270 戶를 無作爲로 추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의사조사의 내용으로는 가구주의 직업, 동거가족수, 생활수준 및 경지면적 등 조사대상기구의 일반개황과 함께 15~59세의 동거가족들에 대해서 각기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기술자격증 유무, 과거

공장취업경험 및 취업조건별 취업의사와 취업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진천군 식산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읍면의 산업행정계 상공운수업무 담당공무원이 당연구원에서 작성·유인한 조사표를 이용해 방 문 조사하였다.

10 km

表 1-3 住民就業意思 調査對象部落 및 規模

就業圈區分	對	象 地 域	家 口	數(戸)
	邑面	部落	總家口	調査家口
도 보 통 근 권	진 천 웁	신정리, 옹정부락	72	30
(2km이내 : 도보 및 자		교성리, 교성 3구	83	30
자전거 통근가능)		성석리, 성석 3구	80	30
차량통근 30 分圈	문 백 면	태락리, 역리부락	47	30
(2~6km:시내버스	이 월 면	동성리, 성평부락	39	30
오토바이 통근가능)	문 백 면	구곡리, 내구부락	50	30
차량통근 30분이상圈	백 平 면	석현리, 용암부락	50	30
(6km이상:시내버스	덕 산 면	용송리, 용소부락	60	30
출퇴근버스이용 및 기	초평면	영구리, 상하영부락	76	30
숙사 활용)	_			
a †	6 개읍면	9 개 부 락	557	270

第2章

1. 農村工業開發 實態斗 問題

農村工業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농촌공업의 개발은 오늘날 왜 우리 農政의 主要課題가 되고 있는가? 또한 농촌공업이 전체 제조업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며 현실적으로 이들 농촌공업 개발이 제약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農村工業化政策의 추진배경과 개발실태 및 농촌공업의 저개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最村工業化政策의 推進背景

농촌공업이란 農村地域이라 부를 수 있는 空間的範域에 立地하고 있는 일체의 製造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서 농촌지역이란 農林水產業이 地域產業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총칭하나 일반적으로는 資料利用의 편의상 行政區域을 基準하여 邑 및 面을 包含하는 郡地域을 뜻한다. 따라서 農村工業化란 이들 지역의 제조업부문의 개발을 통한 地域産業構造의 高度化와 이에 따른 지역고용구조의 개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농촌공업개발은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産業構造를 가진 농 촌지역에 非農業就業機會를 확대함으로써 농외소득 증대와 農業構造改善 을 통한 농촌의 경제, 사회기반을 강화함으로써 都農間의 균형개발 및 농 촌인구의 現地定着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오랜 세월동안 정책입안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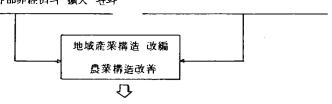
특히 이들 농촌공업개발은〈圖2-1〉과 같이 도시 및 농촌지역에 많 은 긍정적인 波及效果를 가져옴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커다란 그 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농촌공업의 중요성은 70년대 후반 開放農政論이 대두되면서 부터 농업소득증대의 정체 부분을 補塡하 는 수단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 2-1 最村工業開發의 肯定的인 波及效果



- 都市人口增加 抑制 및 分散
- 각종 사회적 서비스의 限界費用節減 農村地域의 就業機會 및 所得增大
- 이 住宅, 敎育, 交通難등 각종 都市問 題 완화
- 都市生活費 節減
- 環境汚染등 外部非經濟의 擴大 위화

- 農村人口의 現地定着 및 流出 抑制
- 農村下部構造施設 및 관련산업육성
- 農地流動性 提高斗 機械化 促進
- 地方 財政收入 擴大



國民經濟의 均衡發展

- 農村經濟 活性化豆 地域間 均衡開發
- 都市, 農村問題의 해소로 經濟, 社會基盤의 安定

나. 農村工業開發 實態

地方工業 및 農村工業에 관한 그동안의 많은 관심과 努力에도 불구하고 농촌공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70 ~ 80년 기간동안 도시 및 농촌공업의 성장실태를 보면 〈表 2 - 1〉과 같은데 도시공업의 연평균성장률이 사업체수가 4.67%, 종업원이 7.23%, 생산액이 12.22%인데 비해 같은 기간 농촌공업은 사업체수 2.26%, 종업원수 9.56%, 생산액12.52%씩 각기 성장함으로써 종업원 및 생산액은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사업체수의 성장에 있어서는 도시공업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 사업체수의 낮은 성장은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촌지역에 包含되어 있던 18개 邑이 市로 승격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제조업체가 도시공업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업체수의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수와 생산액 규모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공업의 업체당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表 2 - 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70년의 경우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는 17.6명 그리고 생산액은 243.4 백만원인데 반하여 1984년에는 종업원 46.4명, 생산액 928.2백만원으로 업체당 규모가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촌공업의 全體 工業에서의 比重과 업체당 규모(size)가 모두 도시공업에 비해서는 훨씬 뒤지고 있는데 1984년 현재 도시 및 농촌지역의 공업개발 규모를 비교한 것은 〈表 2-2〉와 같다. 즉 농촌공업이 전체 제조 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의 25.8%, 종업원수의 21.2% 및 생산액의 18.5%로 총인구의 약 35.7%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전체 제조업의 약 20%만 할당되고 있어서 인구 千名당 사업체수는 0.74 社, 종업원수 34.3명, 생산액 910.6百만원으로 각기 도시공업의 62.7%

 ^{1) 18}개 市 昇格地域은 1973년 7월 안양, 성남, 부천시, 1978년 2월 구미시, 1980년 4월 동해, 창원, 제천, 영주시, 1981년 7월 광명, 송탄, 동두천, 태백, 정주, 남원, 나주, 영천, 김해, 서귀포시 등이다.

表 2-1 地域別 工業開發實態의 成長

단위 : 名, 10 億

	都	क्ता 🕮	業		村工	業	企		阈
	菜體數	從業員數	生產額20	業 體 數	從業員數	生產額2)	業體數	從業員數	生產額 ²⁾
1970	16. 275 (67. 5)	694, 962 (83, 4)	8, 713. 4 (82. 0)	7, 839 (32. 5)	138, 284 (16. 6)	1, 907. 9 (18. 0)	24, 114	833, 246	10, 621. 3
1975	16. 709 (73. 3)	1. 191. 137 (83. 9)	17, 591, 3 (83, 1)	6, 078 (26. 7)	229, 007 (16. l)	3, 574. 3 (16. 9)	22,787	1, 420, 144	21, 165. 6
1980	21. 990 (71. 3)	1. 595, 206 (79, 2)	27, 795. 5 (76. 6)	8, 833 (28. 7)	419, 525 (20. 8)	8, 483. 6 (23. 4)	30, 823	2,014,751	36, 279. 1
1984	30, 837 (74, 2)	1. 846. 858 (78. 8)	43, 750. 5 (81. 5)	10, 712 (25. 8)	496, 738 (21, 2)	9. 943. 4 (18. 5)	41, 549	2, 343, 593	53, 693, 8
年平均增減 70 ~ 75	5. 28	11. 38	15. 09	△ 4.96	10. 62	13. 38	1. 13	11. 25	14. 79
$75 \sim 80$	5. 65	6. 02	9. 58	7. 76	12.87	18. 87	6. 23	7. 25	11. 38
80 ~ 84	8. 82	3.73	12. 01	4. 94	4. 31	4. 05	7. 7 5	3. 85	10. 30
70 ~ 84	4. 67	7. 23	12. 22	2. 26	9, 56	12. 52	3, 96	7. 67	12. 27

資料:李桐弼,"農村工業의 規模,性格 및 成長分析",「農村經濟」相 9 권제 4 호, pp. 137 ~ 151, 1986. 12.

¹⁾ 農村工業은 邑 및 面地域工業. 2) GNP디플레이터로 환산한 80년 不變價格

		·		Ţ
		都市	農 村*	計
穂	人 口(千名)	26, 076 (64. 3)	14, 502 (35. 7)	40, 578
製造	業體數(社)	30, 837 (74. 2)	10, 712 (25. 8)	41, 549
製造	紧就 業 者 (名)	1,846.858 (78.8)	496, 738 (21, 2)	2, 343, 593
製造	紫生產額(10億)	58, 100. 7 (81. 5)	13, 204. 8 (18. 5)	71. 305. 4
	業 體 數 (社)	1. 18	0. 74	1. 02
人「	就 業 者 (名)	70. 83	34. 25	57. 76
千名	生產額 (百만원)	2, 228. 13	910. 55	1, 757. 24
	就 業 者(名)	59. 9	46. 4	56. 4
業體 愷	生產額 (百만원)	1, 884. 1	1, 232.7	1, 716. 2
從業員當	క 生產額 (百만원)	31. 5	26. 6	30. 4

表 2-2 都市 및 最村地域의 工業開發 比較,1984

48.4% 및 4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당 종업원수 및 생산액은 도시공업이 59.9명 및 1.884.1 百만원인데 비해 농촌공업은 46.4명 및 1.232.7 百만원 수준으로 이 역시 도시공업의 77.5% 및 65.4%수준이며 종업원당 생산액도 도시공업이 31.5 百만원에 비해 농촌공업은 ,26.6百만원으로 도시공업의 84.4%에 불과하다.

다. 工業立地政策과 最村工業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농촌지역의 공업개발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社會間接資本과 金融機關의 미발달, 기능인력 확보의 곤란 및 지원행정기관과의 접근성 문제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工業立地條件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이 농촌지역의 공업개발을 저해한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 밖에도 공업개발관련정책, 특히 工業立地政策 등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농촌지역의 공업개발을 제약한 요인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의 工業立地開發이 주로 대도시나 일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나머지 농촌지역의 공업입지개발이 부진했다는 점이다. 공업용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공업단지의 연도별 지정실태는 〈表 2-3〉과 같은데 제 1 차 및 제 2 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1962-71) 중에는 도시지역에만 겨우 11 개의 공업단지가 지정되었고 1972년 이후 크게 확대되어

期間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地域		(62-66)	(67-71)	(72-76)	(77-81)	(82-86)
都	市	5	6	16	15	7
農	村	-	-	5	11	5
計		5	6	21	26	12

表 2-3 年度 및 地域別 工業 日地 指定

資料: 商工部,「工場立地案内」, 1986.

農村地域에도 공업단지가 지정되었다. 즉,都市・農村地域을 合하여 제 3차 경제계획 기간중에는 21개,제 4차 경제계획기간 중에는 26개,제 5차 경제계획 기간중에는 12개 단지를 각기 지정하였다. 따라서 제 4차 계획 이들 工業團地를 종류별로 보면 1967년 「地方工業開發法(法律第 2187號)」에 의한 地方工業開發 獎勵地區와 1971년의 「都市計劃法(法律第 2291號)」에 의한 工業地域, 1973년의 「產業基地開發促進法(法律第6257號)」에 의한 產業基地 및 1978년「工業配置法(法律第3069號)」에 의한工業誘致地域 등 7種 70個 團地에 이르고 있으며,이들 중 農村地域에 입지하고 있는 것은 〈表 2-4〉와 같이 4종 21개 단지로서 단지수의 30.0%,造成面積의 16.0%(21,468千㎡) 및 分讓面積의 15.7%(20,328千㎡)에 지나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의 공업개발을 제약하는 두번째 制度的 要因으로는 각종 土地 利用關係法規에 의해 공장용지의 확보가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으며 工場 設置節次가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表 2 - 5〉에서 工業立地의 규제실태를 보면 57개 관련법규에 의해 129개 용도지역으로 고시된 면적 92,321

km² 중 공장설치를 허용하거나 계획적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은 10개 법규에 의한 12개 용도지역 516 km² 로 告示面積의 0.6 %에 불과하고 나머지 99.4 %에 해당하는 91,805 km² (117개 용도지역)은 51개 관

表 2 - 4 地域別 工業團地造成 및 分談實態,1970-

단위:千km²

T 1881 651-185	造成根據	· 全		阈	戲	村	
工團種類	道队仅像	图地數 造成面積 分讓面		分讓面積	團地數	造成面積	分讓面積
輸 出自由地域	輸出自由 地域設置法 (1970)	2	880	880	-	_	_
* 工業地域	都市計劃法 (1971)	20	18,725	17, 966	3.	982	982
產業基地	産業基地 開發促進法 (1973)	14	76, 812	75, 199	7	13, 896	13, 625
地方工業 開發獎勵 地 區	地方 工業開發法 (1967)	25	36, 775	34, 369	8	6, 301	5, 470
工業誘致 地 域	工業配價法 (1978)	9	1, 019	964	3.	289	251
a t	-	100 (100)	134 ,211 (100)	129,378 (100)	21 (300)	21,468 (16_0))	20, 328 (15.7)

☆ 기타 工團2個 포함

資料:李桐弼,"農村工業의 規模,性格 및 成長分析",「農村經濟」,제 9 刊 제 4 호, 1986.12, p. 139.

계 법규에 의해 공장설치를 금지하거나 또는 공장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工場用地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설치에 관련된 27개 법규에 의해 206개 부서와 기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認許可權이 中央部署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 역시 공업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장설립절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表 2 - 6〉과 같은데 한국의

	迎계法律数	用途地域數	面 積 (km²)
工業設置 금지 또는 제한	51	117	91. 805 (99. 4)
·원칙적으로 금지	47	103	-
·제한적 <u>으로</u> 허용	13	31	-
工場設置許容 圣七 計劃的 誘致	10	12	516 (0. 6)
āt	57	129	92, 321 (100. 0)

表 2-5 工業立地 規制實態

資料:全經聯外"工場建設의 國滑化를 위한 工業立地 및 配置關係法律의 整備改編方案", 1986.5, p. 6.

表 2-6 工場設置の	세 必要한	節次。	期間	및	具備書類	
-------------	-------	-----	----	---	------	--

	韓國 (84)	日本(83)	台灣(83)	美國(82)
節 次 數 (段階)	62	46	20	9
延처리기일 (日)	1, 005	492	245	7 5
實처리기일 (日)	530	284	188	145
具備書類 (種)	382	1, 325	238	23

資料:全經聯外,"工場建設의 圓滑化를 위한 工業立地 및 配置關係法律의 整備 改編方案" 1986. 5, p.8.

경우 382 종류의 서류를 구비하여 62 단계의 전차를 거치면서 530 日이소 요되는데 비해, 일본과 대만 및 미국은 각기 284일, 188일 및 145일만 소요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요인은 비단 농촌공업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의 공업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는 기존의 대부분 농촌공업이 自由立地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自由立地工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현재首都圈을 포함한 부산, 대구,광주,대전 등 大都市의 工業分散을 促進하기 위해서 이들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他地域으로 이전함 경우

閏2-2 工業日地의 分布貸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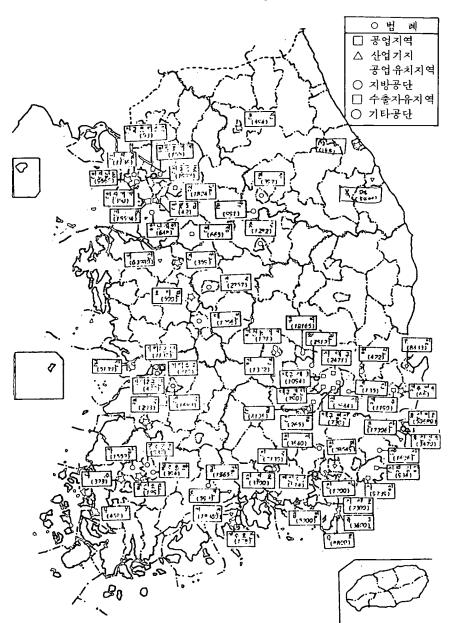


表 2-7 立地形態別 稅制支援 比較

移轉前立地	移轉後 定着地의 立地形態					
地域	工業関地	偶别自由立地				
	○ 國稅滅免	○ 國稅減免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大	특별부가세, 법인세 면제	특별부가세, 법인세 면제				
	- 이전준비금의 損金算入	- 이전준비금의 損金算入				
都	(시설가액의 10 %内)					
	- 사업용 투자액의 6% (국신	一 左 同				
क्त	자재는 10%) 투자세액공제					
	와 사업용 자산투자액의 50					
	% 특별감가상각증 택일					
	〇 地方稅 減免	○ 地方稅 减免				
	-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의	없 음				
	5년간 면제					
其	○ 國稅 減免	○ 國稅 滅免				
他地域	없 <u>음</u>	없 음				
() 갓	○ 地方稅 減免	○ 地方稅 減免				
(창업목함)	- 취득세, 등록세 5년간 면제	없 음				
함 	- 재산세 면제 2년간					

資料:商工部,「工場立地案内」,1986.

에 稅制惠澤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 때 工業團地로 이전할 경우에는 〈表 2 - 7〉과 같은 國稅 및 地方稅 감면혜택이 있으나 自由立地하게 되면 國稅 감면혜택만 부여되고 地方稅 감면은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創業이나 大都市 이외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이 공업단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나, 自由立地하면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비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농촌공업의 저개발 이유는 농촌지역의 商工行

表 2-8 市郡의 商工業務 擔當部署 및 職員數

단위: 人, 개소

擔當部署	市郡數	職員數	事業體數	市郡當 職員數	職員當 業體數
產業課 - 產業行政係	3	7	40	2.3	5. 7
// -商 工 係	1	3	62	3. 0	20. 7
〃 - 商工運輸係	1	3	22	3. 0	7. 3
殖產課 - 商工運輸係	14	40	701	2. 9	17. 5
農產課 - 產業行政係	7	17	523	2. 4	30. 8
〃 - 商工運輸係	1	2	10	3	5. 0
商工課 - 商 工 係	1	3	40	3	13. 3
計 및 平均	28	75	1, 398	2. 7	18.6

政機能이 미약하여서, 이들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表 2-8〉에서 1984년 및 85년에 지정한 28개 市·郡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產業課,殖產課,農産課 등에서 상업, 운수 및 농정업무와 함께 취급되고 있다. 또한 市郡當 2.7명씩 75명의 공무원이 상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의 職種을 살펴보면 行政職이 50명(66.7%), 土木職이 20명(26.7%), 農林職이 5명(6.7%)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공업무를 다루는 전문부서와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농촌 공업들이 당면하는 각종 문제를 상담하거나 지도, 육성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2. 地域別 工業開發集積度 分析

地域別 공업개발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市·郡벌 공업 집적 도를 분석하였다. 農村地域의 工業開發의 정도가 各 地域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立地의 有利性을 間接的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때 지역별 工業集積度의 차이를 把握하는 것은 해당지역에 대한 농촌공업, 특히 農工地區開發의 相對的인 難易度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地域別 工業集積度의 파악은 地域別 蒼等支援을 通한 均衡的인 農工地區의 開發을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공업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集積地域은 객관적인 工業立地條件들이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비교적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입주 업체의과도한 집중을 抑制하고 불리한 지역의 入住을 促進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공업개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工業集積度 分析方法

集積(agglomeration)이라 함은 大規模 또는 同質的, 異質的인 다수의 經濟主體가 단위지역에 집중적으로 立地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工業集積度란 단위지역에 공업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공업이 集積이냐 또는 非集積이냐를 가리는 指標다 그 정도를 측정하는 일정한 公式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정해진 어떤 지역과 그 주변지역과의 비교분석에 의한 分布上의 차이점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업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集積되어 있는냐 하는 문제 역시 공업개발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몇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대적인 비교분석에 의하여 규명될 수 있다. 즉 공업개발의 정도를 나타내 준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체수, 면적 km² 당 생산액 및 공업용지 그리고 인구 千名당 2차산업 종사자수의 네가지 지표를 각 지표의 크기에따라 1~10등급으로 계층구분하여 해당 지역에 각기 10~1 점까지의가 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들 지표를 종합하는 工業集積度을 산출하여 지역간의 공업개발 정도를 파악하였다.

²⁾ 黃軟璣, "우리나라 工業의 地域別 構成", 「地理學」 제 8 호, p. 38. 1973. 5.

일반적으로 공업개발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발지표에는 지역의 사업체수와 종업원, 생산액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때 생길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사업체수 이외에 면적 km² 당 생산액 및 공업용지와 인구 千名當 종업원수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이 농촌공업개발을 통한 농외취업기회의 확대에 촛점을 맞춘 관계로 대상사업체, 생산액, 종업원수에는 각기 광업을 비롯한 2차산업 전체를 포함시켰다.

또한 분석자료는 1984년을 기준으로 경제기획원의 鑛工業센서스 조사 결과보고에 발표한 시군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 工業算積度 分析内容

■ 市都別 袋000分

공업의 지역별 개발정도는 기본적으로 공업생산 설비인 공장의 분포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수는 그 규모나 생산기능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1984년 鎮工業센서스 자료를 기준으로 상시종업원 5인이상 광공업체를 10등급으로 계층구분 하여 전국 192개 시군의 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表 2 - 9〉와 같다. 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와 수원, 안양, 부천 등 首都圈의 시지역 및 구미, 포항, 울산, 창원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된 지역 등에 업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경북, 전북 등지의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대에 위치한 시군에는 사업체들이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체수는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규모가 각기 다르고 사업체의 규모나 생산능력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어는 지역에 공업개발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② 面積 km²當 工類用地

공업용지 역시 공장설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공업개발 정도를 파악하는 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面積 km²當 공업용지 분석결과는 〈表 2 -

10 〉과 같은데 사업체수에서 上位그룹을 형성하였던 화성, 시흥, 고양,광주, 용인 등 수도권의 郡地域이 1계층에서 제외된 반면 비교적 면적규모가 적은 市地域이 상위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表 2-9 業體数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分布

단위 : 社

		217 3 733
	場數 階層	해 당 기 역*
1	199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부천 성남 안양 화성 반월 대전 광주 신안
1		남양주 시흥 고양 광주 용인 김포 마산
2	149-198	수원 의정부 양주 청주 전주 이리 구미 울산 진주 양산 광명포
_	149~196	천 이천 공주 <u>군산 목포</u> 경산 파주 보령
	00 107	창원 평택 동두천 안성 원주 청원 천안 서산 의산 여수 광산 완
3	98-197	도 달성 삼천포 김해 세주 영광 논산 강릉
4	70.07	여주 <u>춘천</u> 통해 정선 대덕 아산 천원 완주 여천 진도 포항 김천
4	79-97	영일 영풍 문경 충주 밀양 울주 <u>안동</u>
5	50. 7 9	양평 옹진 태백 속초 명주 충주 당진 남원 순천 화순 해남 경주
5	59-78	안동 월성 상주 김해 김제 연기 영월
6	40 50	홍성 가평 강화 철원 부여 예산 정읍 장홍 영주 영덕 칠곡 하동
	48-58	남세주 거창 진해 제천 삼척 정주 옥천
7	20.47	송탄 괴산 음성 충원 단양 남원 고창 옥구 담양 고흥 강진 영압
_ ′	39-47	무안 나주 의성 의창 거제 합천 영천
8	21 20	홍천 원성 보은 영동 제원 금산 서천 승주 보성 함평 영천 성주
0	31-38	예천 함안 사천 서귀포 북제구 금릉 여천
_	01 20	연천 고성(강원) 청양 순창 부안 급성 장성 청도 선산 울진 신청
9	21 - 30	창녕 남해 고성(경남) 광양 진안 평창 봉화 진양
10	90	과천 춘성 횡성 화천 양구 인제 양양 진천 무주 장수 곡성 구례
10	20	군위 청송 영양 고령 울릉 의령 통영 임실 함양
_		

註:밑줄친 지역은 行政區域상 市地域임.

資料:經濟企劃院,「鑛工業센서스」 1986.

3 面積 km²當 生産額

공업개발의 결과는 결국 生產額 규모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생산액은 공업개발의 집적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表 2~10 面積 km² 當 工業用地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分布

 $m^{,2}$

	面積 kan 2 當 工業用地階層		해	당		지		역	
1	19, 89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	-원	안양	부천	광명	<u>반월 청주</u>
1		천안 군산	<u>역수</u>	여천 구	^L D]	마산	포항	<u>울산</u>	<u>창원</u>
2	6, 655-19, 892	성남 의정-	부 송	탄 시흥	춘추	선 동	<u> 내</u>	선 전	주 이리 광주
	0,000 10,002	목포 금성	진해	충무 집] 해	<u>김천</u>	<u>진주</u>	경산	거제
3	3, 100-6, 654	이천 용인	화성	동두천	양국	F 남	양주 3	병택 _	고양 김포
J	0, 100 0, 004	원주 대덕	남원	광산 실	}천≟	포 울	주 <u>영</u>	천 원	성 양산 달성
4	1, 074-3, 099	여주 광주	<u>강릉</u>	아산 순	.천	경주	안동	<u>영주</u>	충주 속초
	1, 0/4=3, 039	제천 단양	서천	천원 절	<u>주</u>	함안	김해	연기	과주
5	450-1, 073	포천 안성	익산	청원 옥	천	논산	담양	영일	봉화 밀양
_		의창 제주	칠곡	<u>서귀포</u>	वंत्र	선 함~	성 원/	성 김기	세 보성
6	297-449	영천 연천	삼척	완주 음	₽성	중원	제원	공주	부여 옥구
		승주 나주	함평	완도 시	천	문경	납제-	주 무여	<u> </u>
7	190-296	보령 홍성	양평	영동 예]산	정읍	고창	부안	곡성 화순
		강진 영광	진도	창녕 통	ન્લુ	고성(경 남)	북제	주 영암 명주
8	124-189	가평 함양	임실	진양 금	-산	정선	철원	괴산	청양 하동
	124 105	광양 고흥	해남	영덕 고	뭥	예천	선산	영풍	강화
9	64-123	장홍 의성	거창	성주 상	주	당진	급롱	옹진	고성 보은
J		진천 구례	신안	청도 남	해	산청	합천	서산	의령
		횡성 장수	남원	과천 춘	성	홍천	영월	평창	화천 양구
10	-63	인제 양양	진안	순창 군	위	안동	청송	영양	무주 울진
		울릉							

註: 밑줄친 지역은 行政區域상 市地域임. 資料: 經濟企劃院,「鑛工業센서스」, 1986. 1984 년 광공업센서스 자료에 의한 면적 km²當 생산액은 〈表 2-11〉과 같다. 대개 工業用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포항, 울산,창원여천 등 대규모 重化學工業團地가 있는 지역의 생산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業種이 주로 大企業들이기 때문이다.

表 2-11 面積 km²當 生產額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分布

Ū	百積 kund當	해 당 지 역
生	牽額 階層	-7 0 1 7
1	5070-	울산 포항 여천 인천 부천 창원 안양 수원 마산 서울 부산
_	3070	구미 반월 광명 청주 군산 정남 대구 목포
2	1329 -5069	시흥 천안 대전 전주 이리 김해 충무 광주 송탄 의정부 진주
	1023 3003	<u>진해</u> 거제 <u>여수</u> 울주 <u>동해</u> 대덕 <u>김천</u> 용인
3	450-1328	양산 화성 이천 <u>춘천</u> 평택 남양주 경산 <u>원주</u> 광산 <u>동두천</u>
	1.70 1020	<u>태백 영천 안동</u> 김포 양주 <u>충주</u> 고양 광주 <u>금성</u>
4	153-449	<u>삼천포 강릉</u> 연기 <u>남원</u> 원성 달성 <u>순천</u> <u>경주</u> 영주 아산 <u>세천</u>
	100 440	단양 천원 김해 서천 옥천 <u>정주</u> 의창 정선
5	64-152	여주 안성 <u>속초</u> 과주 <u>제주</u> 삼칙 영월 문경 월성 칠곡 영일
J	04-152	보령 청원 장성 부여 공주 포천 밀양 논산
6	29-63	영천 완도 담양 함안 여천 완주 김세 명주 사천 익산 제원
О	29-03	옥구 화순 음성 봉화 홍성 나주 중원 창녕
7	15-28	임실 금산 통영 <u>과천</u> 강화 무안 승주 영동 괴산 울진 선산
•	13-26	당진 영풍 <u>서귀포</u> 금룡 가명 진도 남제주 옹진
8	9-14	신안 강진 곡성 영암 양양 진양 영덕 하동 연천 북세주 진안
0	9-14	양평 서산 보은 성주 정읍 함평 고성(경남) 함양
9	5-8	거창 상주 산정 예산 광양 고창 고흥 예천 보성 의성 청양
9	5-8	남원 무주 울릉 장흥 해남 청도 부안 횡성
10	,	합천 고령 고성(강원) 진천 남해 안동 의령 순창 구례 평창
10	-4	철원 춘성 장수 인제 양구 홍천 군위 청송 영광 영양 화천

註: 밑출친 지역은 行政區域상 市地域임. 資料: 經濟企劃院,「鑛工業센서스」, 1986.

图 人口 千名當 從獎員政

공업개발의 목표가 주민들의 취업증대라고 하면 단위 인구당 종업원 즉 實工業人口密度 역시 공업개발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이 는 특히 제한된 면적을 가진 都市地域의 공업개발이 면적이 넓은 농촌지 역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단점을 보완하는 지표로 1984 년 광공업센서스자 료를 분석한 결과 〈表 2-12〉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들이 2계층

表 2-12 **人口 千名當 從獎員政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分布** 단위 : 名

	口千名當	해 당 지 역
1	115-	<u>인천</u> <u>부천</u> 양주 화성 시흥 김포 <u>반월 태백 구미</u> 경산 <u>마산</u> <u>울산 창원 김해</u> 양산 거제 정선 안양 용인
2	61-114	울주 천안 부산 성남 이리 여천 포항 수원 남양주 광주 이천 청주 완도 달성 대구 단양 군산 대덕 <u>의정부</u>
3	41-60	<u>서울</u> 삼척 여주 영월 문경 <u>광명</u> <u>동두천</u> 평택 고양 명주 <u>대전</u> 아산 천원 신안 <u>김천</u> 월성 <u>진주</u> <u>충무</u> 김해
4	20-40	송탄 과주 포천 연기 보령 화순 안성 옥천 <u>전주</u> 목포 광산 삼천포 의창 동해 원성 남원 경주 친곡 <u>진해</u>
5	18-25	용진 <u>춘천 원주</u> 양양 세원 <u>광주</u> 여수 여천 함안 밀양 사천 중원 담양 <u>안동</u> 영천 영일 영천 봉화 장성
6	13-17	가평 <u>충주</u> 청원 음성 공주 <u>정주</u> 완주 <u>금성</u> 영풍 울진 통영 양평 강화 <u>강</u> 릉 <u>속초</u> 서천 진도 <u>영주</u> 선산
7	9-12	철원 <u>제천</u> 보은 영동 논산 부여 옥구 익산 <u>순천</u> 곡성 영암 영덕 하동 남제주 홍성 괴산 연천 금산 산청
8	6-8	평창 인계 서산 임실 정읍 김제 승주 강진 영광 청도 성주 금릉 상주 진양 창녕 고성(경남) 함양 거창 <u>제주</u>
9	4-5	홍천 양구 당진 무주 남원 장홍 해남 무안 나주 함평 고령 합천 <u>서귀포</u> 북제주 횡성 고성(강원) 고창 의성 예산
10	-4	과천 춘성 화천 진천 청양 진안 장수 순창 부안 구례 광양 고홍 보성 군위 안동 청송 영양 울롱 의령 남해 여천

註:밑줄친 지역은 行政區域상 市地域임.

資料:經濟企劃院,「鑛工業센서스」, 1986.

으로 떨어진 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의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공업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綜合指標에 의한 工業集積

이상에서 살펴본 사업체수, 면적 km² 工業用地 및 生產額, 人口千名當 종업원수에 의한 工業集積의 상호비교는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체의 업종에 따라 규모와 생산능률이 상이하고 대상지역의 면적이나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4가지 지표를 종합한 綜合指數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각 지표의 계층에 따라 일정한 加重値를 부여하여 이를 合算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즉 1~10 계층에 각기 10~1 점까지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역별로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다시 1~10階層으로 재분류하였는데 그 결과는〈表 2 - 13〉과 같다.

綜合指數에 의한 공업집적도 분석은 기업규모나 생산성, 지역의 면적및 인구규모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개의 지표 들에 대해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한 것의 타당성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 나 현실적으로 공업개발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工業集積度 分析結果

이상에서 살펴 본 사업체수, 面積 km²當 공업용지와 생산액, 인구 千名當 종업원수 및 이를 종합한 綜合指數에 의한 집적도분석은 階層區分이 10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를 집적의 크기에 따라 크게 4개 계층으로 재분류하였는데 (表2 - 13)의 綜合指數가 상위 20%(1~2계층) 및 하위 20%(9~10계층)를 각기 工業過密地域과 落後地域으로 파악하고, 가운데 60%를 다시 工業開發地域 30%(3~5계층),工業低開發地域 30%(6~8계층)로구분하여 전체적으로 공업개발의 정도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해당지

綜合指數의 階層 해 닺 역 지 인천 부천 안양 반월 마산 울산 대구 부산 구미 서울 성남 37-40 1 시흥 수원 청주 창원 군산 용인 의정부 광명 화성 김포 대전 천안 여천 김해 이리 포항 경산 남양주 양주 2 34 - 36목포 양산 고양 광주 이천 광주 진주 전주 대덕 여수 충무 울주 김천 평택 동두천 거제 달성 동해 광산 3 29-33 월성 삼천포 진해 원주 춘천 포천 파주 송탄 아산 천원 태백 안동 여주 김해 남원 경주 안성 연기 단양 25-28 4 완도 강릉 정선 문경 보령 울주 영천 청원 공주 옥천 밀양 영일 칠곡 영주 논산 순천 금성 의창 정주 5 23-24 속초 삼척 세천 신안 익산 명주 원성 제주 서천 화순 완주 함안 담양 영월 영천 부여 중원 진도 여천 18 - 226 장성 김제 음성 제원 사천 영풍 봉화 양평 옹진 홍성 옥구 남제주 가평 강화 서산 영광 나주 영덕 괴산 7 14-17 영동 영암 무안 승주 하동 정읍 서귀포 연천 당진 강진 창녕 통영 금산 선산 상주 예산 해남 함평 철원 8 12-13 보성 보은 곡성 거창 고성(경남) 고창 금릉 울진

表 2-13 綜合指數의 階層區分에 의한 地域區分

註: 밑줄친 지역은 行政區域상 市地域임.

역들은 〈表 2 - 14 〉와 같다.

9

10

7-11

4-6

해당지역의 특성을 보면 먼저 工業過密地域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광주, 인천 등 대도시와 부천, 안양, 성남, 시홍, 김해, 경산 등 首都圈과 대도시 인근의 시군, 구미, 울산, 포항, 여천, 창원, 반월 등 대규모공업 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합천 안동 예천 청도 청양 광양 남원 과천

북제주 장흥 진양 임실 성주 양양 의성 고흥 산청 함양 부안

진안 고형 홍천 고성(강원) 평창 남해 무주 횡성 인제 진천

순창 구례 의령 울릉 양구 장수 군위 청송 영양 춘성 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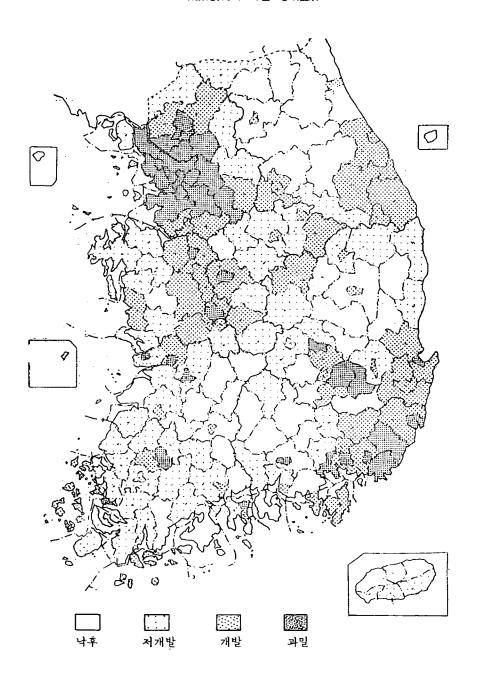
表 2-14 工業開發 築積度에 의한 地域區分 結果

	·	T
		해 당 지 역 명
		인천 부천 안양 반월 마산 울산 대구 부산 구미 서울 성남
工業.	開發過密地域	시흥 수원 청주 창원 군산 용인 의정부 광명 화성 김포대전
(3	30市 8郡)	천안 여천 김해시 이리 포항 경산 남양주 양주 목포 양산 고양
		광주군 이천 광주시 진주 전주 (38個 市郡)
		대덕 여수 충무 울주 김천 평택 동두천 기제 달성 동해 광산군
	工業開發	월성 삼천포 진해 원주 춘천 포천 과주 송탄 아시 천원 태백
中	地 域	안동시 여주 김해군 남원 경주 안성[연기] 단양 완도 강릉
	(27市30郡)	정선 문경 보령 충주 영천지 청원 옥천 밀양 영일 공주 칠곡
間		영주 논산 순천 금성 의창 정주 속초 삼척 제천 신안 익산
		명주 원성 제주 (57 尙 市郡)
地		시천 화순 완주 한안 담양 영원 영천군 부여 중원 진도 여천
	工業低	장성 김제 음성 세원 사천 영풍 봉화 양평 옹진 홍성 옥구
域	開發地域	남제주 가평 강화 서산 영광 나주 영덕 괴 산 영동 영암 무안
	(2市55郡)	승주 하동 정읍 서귀포 연천 당진 강진 창녕 통영 금산 선산
		상주 예산 해남 함평 철원 보성 보은 곡성 거창 고성(경남)
		고창 금룡 울진 (57 個 市郡)
		북제주 장흥 진양 임실 성주 양양 의성 고흥 산청 함양 부안
Ιž	養落後地域	합첸 안동군 예천 청도 청양 광양 남원군 과천 진안 고령
(1	市 39郡)	홍첸 고성(강원) 평창 남해 무주 횡성 인제 진천 순창 구례
		의령 울릉 양구 장수 군위 청송 영양 춘성 화천(40偶市郡)

□내는 農工地區 指定 및 像定地區임.

工業開發地域에는 그 밖에 지방중소도시와 그 인근지역, 태백, 정선, 문경 등 鑛山地域이 포함되어 있으며 工業低開發地域에는 일반 농촌지역 郡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工業落後地域에는 농촌지역 중에서도 특히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나 특수지역 등 工業立地條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囧 2 - 3 工券負租度에 의한 地域區分



이상과 같은 工業集積度分析 결과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農工地區開發은 정부의 특별한 支援이 없는 한 低開發狀態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 예상되는 低開發 및 工業落後地域에 보다 많은 支援惠澤을 부여함으로써 균형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농공지구개발에 관한 지원은 行政節次의 簡素化, 工業用地의 造成 및 入住業體에 대한 稅制支援과 金融支援 등으로 사실상 지역의 공업개발정도나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업개발여건이불리한 지역의 경우 정부의 支援惠澤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不合理性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農工地區에 대한 지원은 工業集積度分析결과에 의한 공업개발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差等化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農村工業開發政策의 推進實態의 問題

이상에서 지역의 均衡開發이란 관점에서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공업의 실태와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부분 농촌공업개발정책은 농촌지역의 遊休勞動力과 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농외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하는 취지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들 시책은 기존의 工業立地政策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소위 農外所得增大論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온 농촌공업개발 시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추진실태와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서는 농외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농어촌부업단지육성과 새 마을工場建設 및 農工地區에 대해 추진배경과 시책내용 및 추진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가. 農漁村 副業園地 育成事業

副業園地育成尊業의 推進背景과 支援内譯

농어촌부업단지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遊休勞動力을 활용하여 農漁家 所得增大를 도모하고, 농촌공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인구 20 만이하의 市와 郡 등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10호이상 농어가 의 참여에 의해서 부탁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對象業種으로는 죽세품, 목공예품, 석공예품, 도자기, 완초제품, 한지 갈포가공 등 民俗工藝品과 봉제품, 자수, 장갑, 스웨터, 마포, 편물, 쓰므 기, 흘치기 등 纖維織物, 단무지, 도토리묵, 편강, 크로레라. 쥐치포, 효 소식품 등 食品加工, 싸리제품, 비닐가공, 인삼밭, 어망, 통발 등 農水產 資材 및 그 밖에 벽돌, 콜크제품, 먹, 소독저, 착화탄 등 一般工產品 등이 포함되고 있다.

對象品目의 선정기준으로는 : 첫째,遊休勞動力의 흡수도가 큰 품목,둘째,原料의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한 품목 세째, 製品의 附加價値가 높고市場性이 양호한 품목으로써 제조업에 해당하는 품목 등이다.

추진시책으로는 이들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획으로 있는 경우에 道知事가 市長·郡守의 지정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받아 지정승인을 하고 農水產部長官에게 보고하며, 市長·郡守는 道知事의 사업승인에 따라 副業團 地를 지정하게 된다. 한편 副業團地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물 및 기계구입과 生產附帶施設 등에 必要한 施設資金과 원료구입 및 생산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融資해주고 있는데 貸出殘額 100百만원의 한도내에서 施設資金 5千만원 (3년거치 5년상환) 운영자금 3千만원(1년거치 2년상화) 까지 農業開發資金으로 年利 10%의 조건으로 融資惠澤을 주고 있다.

[2] 最漁村副業園地의 推進實態

농어촌부업단지 육성사업은 해방이후 藁工品生產獎勵施策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1963년이후 이를 발전시켜 農協과 農振廳의 부분적인 示範事業을 거쳐 1968년부터 農水產部에서 전국 규모로 확대발전시켜 온

表 2-15 副業國地 育成施策의 發展

時 期	推進施策	主 要 施 策 内 容
1945 ~	築工品生産	· 가마니 製造販賣組合의 組織運營
1960	獎勵	・가마니 競進大會 및 講習會 開催
(第1期)		· 가마니 生產農家에게 生必品의 特別配給 및 價格
		補償制 採擇(1946)
		・가마니 製造機械의 有無償 供給
1963 ~	農村家内手工	・農林部 農村手工業發展 育成을 위한 行政研究書
1965	業 育成(農協	作成
(第2期)	中央會)	・農協中央會 里洞組合 家内工業 促進要領 作成
		・各道에 2個里洞組合을 選定, 農家副業 育成
		· 農村家內工業 獎勵館을 設置하여 專擔部署를 두
		고 (生産指導部,業務部)展示販賣場 및 直費場
		運營
		・商工部의 工藝技術型타 設置, 工藝品輸出 5個年
		計劃 樹立
1966 ~	農村副業團地	・地域社會 開發事業의 一環으로 18個 副業團地
1967	示範育成(農	造成(團地化 推進 始作)
(第3期)	村振興廳)	・團地內에 專擔指導士를 配置하여 副業生產技術
		指導
		・生産機材 購入의 國庫補助
1968 ~	農村副業團地	・農水産部에서 農漁村副業團 地 育成을 全國的으로 擴大
(第4期)	全國擴大育成	・共同經營 獎勵를 위하여 10 名以上의 曾員義務化
	(農水產部)	・育成團地에 施設資金 以 運轉資金 融資
		·農家工産品 販賣센타 設置, 運營.

資料: 趙壹鎬, "農家副業育成施策 9 改善方案" 「農漁村副業團地育成 研鑽會資料料」, pp. 32 ~ 33,1986.11.18.

年度	1968 ~ 75	1976 ~ 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新規團地 (個所)	651	334	16	40	128	156	131	104
運營團地	563	5 26	266	242	307	435	505	609
資金支援 (百萬원)	3, 603	8, 456	2, 085	2, 571	5, 570	7, 278	8, 500	8, 268

表 2-16 年度別 副業闘地의 指定 및 資金支援

資料:農協中央會, 農漁村副業團地育成 研鑽會 主題發表, p. 34,1986.11.18.

온 것이다. 농수산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着手한 1968 ~ 86 년기간 동안 부업단지는 〈表 2 - 16 〉과 같이 총 1,560 개단지를 지정하였으나 이중 60.9 %인 951 단지가 지정취소되고 609 단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들 부업단지에 대한 資金支援은 1968 년의 경우 전액 國費補助로 「지 원하였으나 그후 73년까지는 補助와 融資를 병행하고 1974년부터는 일 부 지방비와 融資를 전환하였는데 사업기간중 자금지원액은 46,331百만원 으로 지정업체당 평균 약 3 千만원이 된다.

한편 1986년 11월 현재 지정, 운영중인 전국 609개 부업단지를 道 및 業種別로 살펴보면 (表 2-17)과 같은데 먼저 道別로는 全南北이 자기 132個 (21.7%)단지 및 112個(184%) 단지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충남이 99個(16.3%) 단지, 경남이 78個(12.8%)단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業種別로는 민속공예품이 263個(43.2%)단지, 식료품이 181個(29.7%)단지, 農水產資 材가 75個(12.3%)단지 등으로 민속공예품과 음식료품 및 농수산자재류 생 산업체들이 비교적 많이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副裁屈地의 成果 및 問題點

1986 년에 지정된 104개 부업단지를 제외한 505개 부업단지의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表 2-18〉과 같다. 즉 505개 부업단지에 10,862 농가가참여하여 73,032百만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약 20.535百만원의

78

(12.8) 10 (1.6)

609

(100.0)

(0.7)

農水產 般 民 俗 纖 維 食料品 農畜產 合 計 工藝品 工藝品 織 物 資 材 27 京 畿 2 13 1 5 6 (4.4) 66 (10.8) 7 江 原 10 18 4 27 26 (4.3) 2 忠 北 1 5 4 14 99 忠 13 40 5 23 18 m (16.3)112 全 北 6 67 7 21 11 (18.4) 132 2 53 7 49 21 2. 南 (21.7)59 (9.7) 傻 15 21 13 2 北 4 4

表 2-17 道別 및 業種別 副業團地의 運營實態

表 2-18 農漁村 副業國地 育成事業의 成果

2

34

(5.6)

26

3

181

(29.7)

8

75

(12.3)

區分	迎營盛地		参與農家	参與農家			推定所得	推定所得	
業種別		%	<u> </u>	%]	%		%	
民俗工藝品	221	44	4, 829	45	25, 967	36	9, 752	48	
食 料 品	144	29	2, 764	25	23, 482	33	4, 587	22	
纖維織物	29	6	885	8	2, 697	4	1, 184	6	
農水產資材	66	13	1, 258	12	6, 458	9	2, 148	10	
一般工產品	41	8	906	8	6, 082	8	1, 887	9	
農水產物	4	-	220	2	7, 346	10	977	5	
āt	505	100	10,862	100	73, 032	100	20, 535	100	

資料: 農協中央會, 전계서, pp. 19~20.

嵏

濟 州

計

南

3

52

(8.5)

39

7

263

(43.2)

소득을 올림으로써 副業團地當 약 22 戶의 농가가 참여하여 호당평균 1,890 千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農外就業이나 農外所得 증대 라는 관점에서 농촌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社會經濟的與件 변동에 따라 부업제품생산이 副業形態의 藁工品이나 農畜産物 중심에서 점차 민예품이나 일반공산품 등을 專業으로 생산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당초 추진시책이 현실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 副業團地育成事業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지역에 집단화되어 있다는 단지의 概念에 적합하지 않은 副業團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죽세품이나 돗자리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에 달하는 副業團地가 個別事業場化되어 1個 工場形態로 運營됨으로써 團地當 10戶(農家)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事業의 推進體系에 있어서 당초 행정기관, 農振廳 및 農協이 기능 별로 분담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對象者 및 團地選定, 資金 配定과 事後管理 등 대부분의 업무를 행정기관이 총괄하고, 農協은 資金支 援 및 판매알선에 그치고 農振廳에서는 그동안 담당해왔던 기술 및 경영 지도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 대부분의 부업단지가 규모의 零細性 및 판로확보의 애로와 기술 및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指定取消되거나 休廢業하는 단지가 많다.

네째, 貸出殘額基準 1億원까지의 融資規模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부족과 담보물에 대한 낮은 評價, 支援金利 및 상환기간 등의 불리한 융자조건으로 인해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다섯째, 租稅滅免規制法상 副業所得은 240 만원까지 소득세 납부 免除 惠澤을 주고 있으나 부업단지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製造業部分은 所得 稅法상 副業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실제 세금감면혜택은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零細製造業體들로 구성되어 있는 副業團地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와 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投資稅額 공제 등 國稅減免과 기타 取得稅,財產稅,登錄稅 등 地方稅를 減免해 주는 中小企業規模의 農工地區 入住業體에 대한 지원혜택과 비교해 볼 대 상대 적으로 크게 불리한 실정으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근거하여 이들 副 業團地에 대한 稅制支援을 최소한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새마을工場 建設事業

① 새마을工場 建設事業의 推進背景 및 支援内譯

새마을工場은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原料와 농촌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중대시킴으로써 都農間의 소득격차를 줄이고,지역사회를 발전시키며 농촌의 工業化 내지 工場의 地方分散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973년「農家工產品開發規定」이 제정되면서부터 추진되어 왔다.

새마을공장의 대상지역은 인구 20만이상의 市 및 기존의 공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產業基地開發區域은 제외한 곳이 되며, [1개 邑·面當 1個工場」건설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공장의 지정대상 업종으로는 食料品,木製品,土石製品 등 농촌에서 직접 原料調達이 가능한 업종과纖維, 잡화, 유리제품 등 生產工程이 단순하고 勞動集約的인 업종,금속 및기계,기구제품,전자제품 등 大企業과 系列化가 가능한 업종과 그밖에 농외소득 증대가 가능한 업종을 주요 육성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工場에 대한 지원 역시 副業團地와 마찬가지로 道知事가 市長·郡守의 지정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받아 지정승인을 하고 商工部長官에게 보고하며, 市長·郡守는 道知事의 사업승인에 따라 새마을工場으로 지정하게된다. 한편 새마을공장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金融 및 稅制惠澤을 부여하고 있는데, 업체당 자금지원규모는 施設資金은 5億원(3년거치 5년 상환), 運營資金은 1億원(1년거치 2년상환)을 年利 10%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稅制상의 지원으로는 取得稅의 전액 면제 및 財産稅의 1년간 전액 면제와 그 후 3년간 5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豫算會計

法施行令에 의한 隨意契約 혜택, 전기 및 전화의 우선적 가설, 中小企業振 與公園의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② 州中島工場 愈設의 從從宜態

1972 년 시범사업으로 24개의 새마을工場을 지정한 이래 1983 년까지 매년 100 여개씩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1,357개의 새마을工場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지정공장중 약 50.3 %에 해당하는 682 업체가 지정취소되어 1985 년 현재 675개업체가 새마을공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연도별 새마을 공장의 지정 및 취소실태는 〈表 2-19〉과 같다.

일반적으로 새마을공장 건설사업의 실패원인을 농촌지역의 불리한 工業立地 條件에서 찾고 있으나 지정취소업체중 44 %에 이르는 300 개업체가 지정 후 3년 이내에 취소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지정과정상의 잘못, 예를 들 어 重復指定 등에 연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985년말까지 새마을공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675개 업체의 稼動實態를 보면, 完工工場이 627개, 未完工工場이 4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完工工場 중 稼動工場은 529개, 休業 중인 공장은 98개나 되고 있어 지정공장 675개중 현재 가동중인 공장은 529개로서 약 78.4 %에 불과하다.

지정새마을공장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212個(31.4%)업체로가장 많고 경북이 111個(16.4%)업체,경남이 84個(12.4%)업체, 전남이 69個(10.2%)업체의 순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대구등 대도시지역에도 22個(3.3%)업체나 입지하고 있어서 새마을공장건설사업 역시 도시 중심 공업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정 세마을공장의 業種別 分布를 살펴보면 纖維衣服 및 가죽산업이 200個(29.6%)업체로 가장 많고, 그 밖에 비금속광물제조업 129個(19.1%)업체,음식료품 83個(12.3%)업체 등으로 勞動集約的이면서 原料및 製品市場을 농촌지역에서 구하는 農業關聯產業이 지배적이다.

表 2-19 年度別 새마을工場의 指定取消 및 殘存實態

다위:菜體(%)

取消以		Γ'				年	度		别	取		 背			211.	来版 (%)
年 度	指定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取消計	残 存
1972	24	5	0	0	3	0	1	0	0	4	0	0	0	1	14 (58. 3)	10 (41. 7)
1973	236	80	5	10	17	11	6	6	5	8	14	10	3	0	175 (74. 2)	61 2 5. 8)
1974	182	0	37	12	13	5	3	7	5	10	7	10	7	1	117 (64. 3)	65 (35. 7)
1975	132	0	0	0	21	11	4	1	14	3	7	6	2	1	70 (53. 0)	62 (47. 0)
1976	108	0	0	0	5	4	7	5	6	5	3	6	4	1	46 (42, 6)	62 (57. 4)
1977	78	0	0	0	0	0	7	2	4	5	11	10	3	1	43 (55. 1)	35 (14. 9)
1978	95	0	0	0	0	0	0	3	6	13	16	7	4	0	49 (51. 6)	46 (48. 4)
1979	138	0	0	0	0	0	0	2	5	19	21	19	6	2	74 (53. 6)	64 (46. 4)
1980	7 5	0	0	0	0	0	0	0	0	2	11	13	5	0	31 (41. 3)	44 (58. 7)
1981	91	0	0	0	0	0	0	0	0	0	5	15	9	0	29 (31. 9)	62 (68. 1)
1982	85	0	0	0	0	0	0	0	0	0	1	12	11	2	26 (30. 6)	59 (69. 4)
1983	113	0	0	0	. 0	0	0	0	0	0	0	1	3	4	8 (7. 1)	105
a †	1, 357 (100.0)	85 (6, 3)	42 (3. 1)	22 (1. 6)	59 (4. 4)	31 (2. 3)	28 (2. 1)	26 (1. 8)	45 (3. 3)	69 (5. 1)	96 (7. 1)	109 (8. 0)	57 (4. 2)	13 (1. 0)	682 (50. 3)	675 (49. 7)

資料: 商工部 農村工業課, 1985.

表 2-20 地域別 새마을工場 指定 및 類功宜態

(1984.12末)

	et .	지정공장	완	공 공	장	미 완	공 공	장	
시	역	지정공장	소 계	가 동	휴 업	소 계	건설중	미착공	稼動率
부	산	3	3	3	~	J	_	_	100. 0
대	구	17	17	17	~	_	_	-	100. 0
ર્	천	2	2	2	-	-	-	-	100. 0
경	기	212	209	193	16	3	3	-	91. 0
강	원	25	23	15	3	2	2	-	60. 0
충	북	36	29	24	5	7	7		66.7
है	남	58	54	42	12	4	4	-	72.4
전	북	49	45	34	11	4	3	1	69. 4
전	남	69	58	42	16	11	11	-	60. 9
경	북	111	102	82	20	9	7	2	73. 9
경	남	84	77	67	10	7	7	-	79.8
제	주	9	8	8	~ .	1	1	-	88. 9
£	†	675	627	529	98	48	45	3	78. 4

資料: 商工部 農村工業課, 1985.

③ 새마을工場 登設事業의 推進成果와 問題貼

세마을工場建設事業의 성과를 간단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工場의 失敗" 운운한 것과는 달리 고용이나 수출증대 및 주민소득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1973-84년 기간동안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의 성과는 〈表 2-22〉과 같다. 즉, 984

表 2-21 業種別 새마을工場의 指定 및 稼動資態

(1984.12末)

3. W	지정	완 -	유 유	장	미옥	<u>}</u> -8-	광 장	稼動率
업 종 별	공장	소 계	가 동	휴 업	소 계	건설중	미착공	核奶炉
음식료품 제조업	83	74	53	21	9	9		63. 9
섬유・가죽제품제조업	200	193	165	28	7	5	2	82.5
나무제품 제초업	18	14	14	-	4	4	-	77.8
종이제품 제조업	57	56	52	4	l	1	-	91. 2
화학제품 제조업	71	62	46	16	9	9	-	64.8
비금속강물제품제조업	129	117	100	17	12	11	1	77. 5
제 1 차금속제품제조업	2	2	2	-	_	-	_	100. 0
조립·금속·기계 장비 제조업	76	73	66	7	3	3	_	86. 8
기 타 제 조 업	39	36	31	5	3	3	_	79, 5
計	675	627	529	98	48	45	3	78.4

資料: 商工部 農村工業課, 1985.

表 2-22 새마을工場 建設事業의 推進成果

구 분	- 0 * (H)	생산액 (억원)	수출액 (백만불)	농가소득기여액
연 또	고 용*(명)	[생산택 (역원)	기 전액 (백년·출)	(억원)
83년말 (A)	63, 151	10, 063	614	1, 060
84년말 (B)	64, 419	12, 437	584	1, 261
B/A (%)	102.0	123. 6	95. 1	119. 0
73 ~ 84	64, 419	56, 347	4, 592	6, 870

* 常時從業員數

資料: 商工部 農村工業課, 1985.

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64,419명이 새마을공장에 취업하여 12,437 億원의 생산과 584百만\$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1,261億원의 農家所得을 증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4년 현재 業體當 從業員 122名,生產額 121.8億원,輸出額 1.1百만\$, 농가소득 기여액 2.4億원으로 전체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고용증대와 수출진흥 및 농외소득 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새마을工場建設事業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업의 추진과정상 야기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工場建設事業이 기존의 工場立地政策 즉, 工業團地造成과 지방 및 농촌지역의 공업개발, 대도시 공장의 地方分散施策과 유기적인연 계속에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면이 없지않았다.

둘째, 농촌지역에 입지한 전체 기업체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農村工業開發政策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기업정보 수집이나 기술 및 경영지도, 판매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새마을工場建設事業을 주관하던「(財)韓國農家工產品開發本部」도 1981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흡수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세째, 새마을工場建設事業은 「1개面, 1工場」의 造成原則에 따라 面이나 部落 등 농촌 배후지역에 分散立地함으로써 교통, 통신, 상하수도,동력 引入 등 간접자본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개별기업의 생산비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의식구조상 部落 등 상대적으로 閉鎖된 지역사회에 입지한 공장에 취업을 기괴하여 노동력확보가 어려워지는 것들도 立地選定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네째, 새마을공장 역시 여타의 中小企業 또는 大部分의 農村所在企業과 마찬가지로 資金, 販路 및 原料確保問題를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는데 1984년말현재 休業중인 98개업체의 休業事由를 보면〈表 2-23〉과 같다. 즉, 자금부족이 55個(56.1%)업체로 가장 많고 판로문제와 원료확보가 각기 15個(15.3%)업체씩 나타나 이들 요인들이 새마을공장활성화를 제약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금부족 판로문제 워료확보 施設改替 計 丁. 場 數 55 15 15 13 98 構成比 56.1 15.3 15.3 13.3 100.0

表 2-23 새마을工場의 休業事由

資料:商工部 農村工業課, 1985.

다. 農工地區 開發事業

[1] 農工地區 開發取業의 推進背景 및 支援內譯

農工地區 개발사업은 1983년 12월「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法律 第 3689號)」의 제정과 함께 着手되었는데 法의 제정목적에서 "農漁村 地域에 工業 및 서비스產業을 誘致하여 농어촌 소득원개발을 促進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高度化하여 농어촌경제의 均衡있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農工地區의 개발을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를 집단유치시켜 이제까지 농촌공업개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추진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稅制, 金融, 技術 및 경영지도 등 綜合的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촌지역 공업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農工地區의 개발은 새마을工場建設事業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경영능력의 파악을 위해 엄격한 事業性檢討와 業種制限의 撤廢에 의한 대도시 지역의 移轉對象業體에 農村立地의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小規模工團造成으로 업체들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規模의 經濟와集積利益 및 系列化의 유리성을 추구하여 농촌입지의 非經濟를 克服할 수있도록 구상된 것이다. 특히 계획적인 工團形態의 농공지구개발은 土地의효율적 이용과 산발적인 공장입지에 따른 農村地域에 대한 公害擴散의 防

止 등을 가능케하여 快適한 농촌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농공지구개발사업에 대한 支援內譯으로는 먼저 그동안 농촌공업개발의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각종 認許可 조치를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第 10 條第 4 項의 규정에 의해 市長, 郡守의 사업계획승인으로 대폭 간소화시켰으며, 둘째, 工場用地의 造成 및 分讓時 代替農地造成費 면제와 조성비지원, 용지분양가의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農工地區의 指定은 一般指定과 特別指定으로 구분하여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특히 立地與件이상대적으로 불리한 일반지정 농공지구에 대해서는 用地買收 및 敷地 施工費의 20 %까지 國費補助로 하고 있다.

세째, 入住業體에 대한 金融支援으로 施設資金 3億원(3년거치 5년 분할상환), 運營資金 1億원(1년거치 2년분할상환)을 年利 9%의 金利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네째, 入住業體에 대한 國稅 및 地方稅 滅免惠澤을 부여하고 있는데 國稅의 경우 租稅滅免規制法 第 11條의 2에 의거하여 所得稅, 法人稅의 3 년간 면제 및 그 후 2년간 50% 滅免과 事業用資產價額의 15% 범위내에서 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特別減價償却의 100% 추가인정 등이 있으며 地方稅에 있어서는 取得稅 및 登錄稅의 면제와 財產稅의 초년도 100% 및 그 후 3년간 5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中振公 및 農開公의 技術 및 經營指導와 生產製品의 판매 및 수출지원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② 最工地區 開發取獎의 推進口態

1984년 후반부터 着手된 農工地區開發事業은 1986년 11월 15일현재 22개 地區(611千坪, 218業體入住)가 지정완료되었으며, 12개 地區(403千坪, 83業體入住)가 지정심사 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는 34개 地區 1,014千坪, 301業體)가 農工地區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다.

이들 34개 地區의 내역을 살펴보면 1984년 9월에 1차로 지정한 7개

地區 (136千坪)은 工團造成을 완료하여 현재 工場建策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일반지정이 17개 地區, 특별지정이 10개 地區로 구성되어 있다. 道別 農工地區의 개발실태는 〈表 2-24〉와 같이 32개 市郡에서 34개地區 를 지정하였는데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忠淸南北道에는 무려 14개의 농 공지구가 지정되었다

한편 既指定된 22개 농공지구에 사업성검토를 거쳐 적격업체로 판정받은 入住業體는 218社로 地區當 약 10여개 업체씩 입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業種別로 살펴보면 〈表 2-25〉와 같이 기계, 금속제조업, 봉제 및 섬유제조업, 전기, 전자제품제조업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事業形態別로는 移轉業體와 創業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移轉 및 分工場形態로 入住한 140개 업체에 대해서 이전하기 전의 공장소재지나 本工場의 소재지를 문의한 결과 〈表 2-27〉과 같이 首都 圈과 大都市地域이 대부분으로 農工地區의 開發이 대도시 所在工場의 農村地域으로의 再配置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24 道別 最工地區 開發實態

(86.11.15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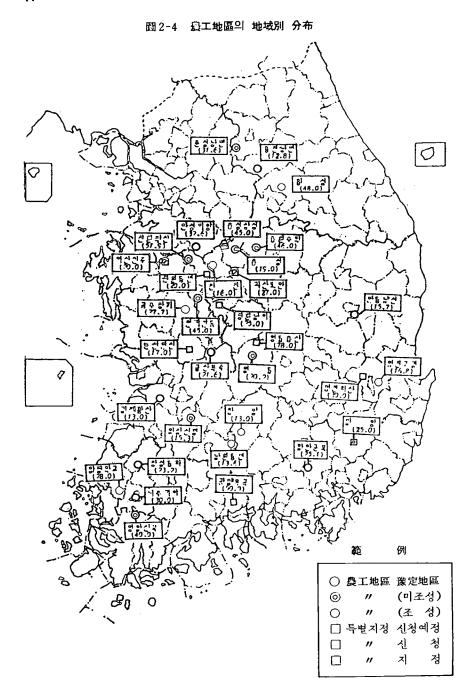
道區分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計
地	EG.	數	1	3	7	7	3	5	4	4	34
市	郡	數	1	3	6	6	3	5 W	4 ②	4	32 (3)

()內는 市.

資料:經濟企劃院,「農工地區施策推進現況 및 向後計劃」, 1986. 11.

表 2-25 農工地區 立住業體의 業種別 分布

合	計	전기·전자	기계금속	봉제·섬유	화학제품	음식료품	기타
	218	39	45	40	35	23	36
(1 00. 0)		(17. 9)	(20. 6)	(18. 3)	(16. 1)	(10. 6)	(16. 5)



分 蜴 業 Ħ 移 T. 숌 轉 創 218 113 27 78 (100.0)(51.8)(12.4)(35.8)

表 2-26 農工地區 入住業體의 事業形態別 分布

資料:經濟企劃院, 전계서.

表 2-27 移轉 및 分工場의 入住前 事業地域

	計	首	都	圈	大	都	市	其	他	地	域
14	10		87			32			21		
a	00.0)		6 2.	D		Q 2. 9)		(15.	0)	

③ 農工地區 開發事業의 問題

農工地區開發事業은 당초 사업착수 단계의 입주업체 확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市郡에서 농공지구지정을 希望하고 또한 임주 업체들이 기대 이상으로 입주신청을 希望함에 따라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있다. 그러나 농공지구의 지정, 工團造成 및 입주업체의 공장건설과 稼動까지는 최소한 2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도 細部推進施策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상당한 성도로 추진체계나 방법이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가지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내포하고있는데 본 연구를 위한 市郡 및 入住業體調査에서 밝혀진 농공지구개발시책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表 2 - 28〉과 같다.

農工地區가 位置한 市郡調査에 의하면 지구지정의 규모와 지정방법, 입주업체의 사업성검토기간과 住民就業問題, 調査設計 및 工事監理方法,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방법과 부대시설의 포한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入住業體에 대한 조사에서도 지구지정방법, 지원부대시설의 범위,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방법,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방법, 사업타당성 검토방법에 있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應答하였는데 이들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地區指定	設 감 리	부 대 시 설	事業의 타당성 검 토	입 주 업 체 지 원	추진체계 및 사후관리	住民就業	āt
市郡調査 (28개)	15 (32. 6)	6 (1 3. 0)	4 (8. 7)	8 (17.4)	-	5 (17. 9)	8 (17.4)	46 (100. 0)
入住業體調査 (81개)	56 (49. 6)	-	36 (31. 9)	2.7)	12 (10. 6)	6 (5. 3)	-	113 (100.0)

첫째, 현재 농공지구 지정방법상 단일 후보지에 대한 適否判定만 하기 때문에 신청후보지의 立地條件이 좋지 못할 경우 탈락하거나 또는 지정후에 규모나 위치를 변경하는 事例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農工地區의 지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둘째, 地域別 농공지구의 개발시 規模의 上限線(市 20 만평, 郡 10 만평) 만 정해 놓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접지역에 入住申請業體들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째, 農工地區의 造成과 관련하여 工場用地를 확보하고자 할 때 用途 地域上 工業用地가 아닌 지역의 토지에 대한 用度變更에 6개월 이상이 소 요되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國庫補助事業인 공 공시설에 운동장, 매점 등 기본시설이 누락되는 등 부대시설의 범위가 불확 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네째, 入住申請業體에 對한 사업성검토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업체당 분양한도와 건폐율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의 경우 사업성검토 자체를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工業用地 분양시 用地價格의 상환기간이 3 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인데 비해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시 國費融資의 경우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인 반면 地方費融資分은 1년거치 2 년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각기 상이하여 입주업체들로부터 用地代金을

回收하기까지 地方費調達이 어려우며,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의 경우 담당금융기관인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농촌지역에 거의 없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지역 주민들의 농공지구 취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기능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적인 장 치가 미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제도 및 사업추진체계에 있어서 農工地區의 開發이 각종 工業立地政策, 즉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工業開發獎勵地區」나 工業配置法에 의한「工業誘致地域」 등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와 함께 농공지구개발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經濟企劃院, 工場의 誘致, 育成 과支援을 담당해야 하는 商工部, 農工地區의 造成과 農漁民의 就業을 담당해야 하는 農水產部 등 농공지구 관련업무의 부처별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으며, 여기서 야기되는 摩擦과 비효율성, 그리고 市·郡단위 상공행정 전담기구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農工地區의 規模와 位置選定 및 농촌지역의 기능인력 수급과 주민들의 농공지구 취업확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第3章

農工地區의 規模 및 位置 分析

農工地區의 指定規模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며, 어디에다 그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농공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 맨먼저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백한 解答이 提示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당해 지역의 社會經濟的 與件이나 立地條件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모를 결정하거나 위치를 선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최소한 規模의 適正性이나 位置選定의 適合性을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章에서는 농공지구의 규모결정과 위치선정에 대한 기존의 지침들을 살펴보고 '84~'85 年에 농공지구 및 예정지구로 지정한 28개 지구에 대한 費用分析을 통해 규모결정과 위치선정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1. 農工地區의 規模 및 位置決定

가. 瓜工地區開發 對象地域

農工地區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農漁村地域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어촌지역은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法律 第3689 號, 1983. 12)」第2條 및 同施行令 第2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農漁村地域이라 함은 郡地域중 農業, 林業 또는 水產業을 主產業으로 하는 지역을 말하며, 市地域의 경우에도 인근 행정구역과의 관계, 가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施行속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은 郡과 인구 10 만이하의 市級都市인 속초, 제천, 정주, 남원, 금성, 김천, 영주, 충무, 삼천포市 등이 포함되며 그밖에 경제기획원 장관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지역으로 고시한 市는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施行令 第7條에 의하여 ①工業團地가 있는 邑面, ②產業基地開發 區域 중 重化學工業基地가 있는 邑面, ③工業配置法에서 규정한 移轉促進 地域과 制限整備區域, ④서울특별시 및 직할市와 인접한 邑面 등은 대상지 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1986년 4월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구 20만 이하의 市까지 포함되도록 확장되었으며 1986년 7월의 회의에서는 이들 지역중 경기도 및 제주도와, 구미, 창원 및 여천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市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농공지구지정 대상시군 및 지정가능 면적을 산출하면 〈표3-1〉과 같다.

表 3 - 1 農工地區 指定對象 市郡 및 指定可能 面積

단위: 千坪

	地 域 區	分	市郡數	除外地域	指定對象 市 郡	指定可能 面 積
市	특 별 및 직	할시	5	5	-	-
	인구 20 만 여	비상市	13	13	_	-
地	인구 10 ~ 20	मु का	19	4	15	3,000
	인구 10 만 여	기하市	24	8	16	3,200
域	小	ät	61	30	31	6,200
君	路 地	域	139	21	118	11,800
4	à	計	200	51	149	18,000

즉, 전국 200개 市郡 중 인구 20만 이상 市 18개와 경기도 및 제주도의 30개 市郡, 대규모 공업개발이 이루어진 구미, 창원, 여천 등 51개시군을 제외하면 전국 149개 市郡이 대상지역이 되는데 이들 지역에 각기市地域은 20만평, 郡地域은 10만평의 지정 工限規模까지 개발한다고 하면 약 1,800萬坪의 농공지구 개발이 가능하다.

물론 울릉군, 진도군, 강화군 등 도서지역과 인제, 양구, 청송, 영양 등의 山間地域 등 현실적으로 工業團地造成이 어려운 지역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제, 울주, 양산, 달성, 광양, 광산, 칠서 등 이미 30만평이상의 공업단지를 확보하고 있는 郡과 경산, 김해, 울주 등 대도시나 대규모공업단지 인근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농공지구개발 대상지역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나. 農工地區의 位置選定

농공지구의 위치선정은 對象市郡의 選定과 선정된 市郡內에서의 농공지구 후보지 즉 장소의 선택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農工地區 施策事業關聯行政便覧」(경제기획원, 중소기업진홍공단, 1986)에 의하면 대상 市郡의 선정시:첫째,國土綜合開發計劃 및 道建設綜合開發計劃 등과 가급적이면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역;둘째,기업들의 入住需要를 고려하여大都市 인근 市郡을 우선적으로 선정;세째,동일 市郡管內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市郡은 제외하는 것 등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의 가능성이높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이미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시군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군내에서 농공지구의 장소 선택은 〈表3-2〉과 같이:첫째, 환경오염의 가능성;둘째,農地,草地 및 林地의 편입문제;세째,농공지 구개발 사업비 규모;네째,交通 등 工業立地條件의 네가지 요인을 기준 으로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表 3 - 2 農工地區의 位置選定基準

	檢 討 基 準
環 境 問 題	— 인근(5~10 km이내)에 上水道 取水源 保護地域 제외
	- 조류 또는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自然環境保全
	地域 제외
	- 인근 江, 河川 등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 제외
	- 排水路가 인근의 농경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기역 제외
農地草地 및	— 집단화된 優良農耕地가 對象面積의 50 %이상 차지하
林地의 編入問題	는 지역 제외, 다만 절대농지가 100%라도 保全價值
	가 없는 지역은 가능
	- 立木度가 좋은 林地는 가급적 피하되 保全林地라도
	立木度가 낮은 지역은 가능
	- 草地의 개발실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가능
地上補償物 및	- 地上物 補償金額이 用地買入費에 비하여 과다한 지역
地 價 問 題	제외
00 125 871 MM 12 - 511 00 872	- 用地買入시 地價가 지나치게 높은 地域 제외
間接附帶施設問題	- 진입도로 및 교량건설비가 敷助造成 施工費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역 제외
	시나시계 표는 시작 세취 - 천력, 통신시설 施工費 또는 工業用水開發費가 지나
	- 선덕, 중선시설 爬工員 그는 그术//////////////// 치게 과다한 지역 제외
用途地域問題	- 國土利用管理法上 工業地域 開發促進地域,山林保全
<i>ா</i> கூடி ஆக் பிறக	地域,耕地地域으로 立地
	- 都市計劃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工業地域, 準工業
	地域으로 입지
	- 가급적 軍事保護地域은 피할것
工業立地問題	- 가급적 고속도로 또는 國道의 可視圈地域으로 交通
	條件이 良好한 지역 선정
	- 水害상습지등 低地帶나 高地帶를 피하고 排水가
	잘되는 지역에 南向立地
其 他	- 用地買收의 곤란이나 지연이 예상되는 지역 및 농공
	지구 지정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지역 제외
	- 지구조성시 분양가능면적이 용지매수면적의 80%
	이상되는 지역 선정
	- 가급적이면 定住生活圈의 中心地인 郡廳所在地
	위주로 선정

資料:經濟企倒院外,「農工地區 施策事業 關聯行政 便覽」, 1986.

다. 段工地區의 規模 및 位置選定 實態

이상에서 살펴 본 농공지구의 규모 및 위치선정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農工地區開發 목적을 달성하는데 각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농공지구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관계규정에 의해 市地域은 20만평까지, 郡地域은 10만평까지 농공지구를 지정, 조성할 수 있도록 上限線만 명시함으로써 地區當 指定規模는 시군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서실제 지역별로 약 1만평(전북 남원군)에서 약15만평(충남 천안시)까지의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84年 및 '85年 9月에 각기 농공지구 및 농공지구 예정지구를 지정한 28개 지역의 총 지정면적은 717,890 坪으로 지구당 평균 256 百坪의 농공지구를 지정하였다. 이들 농공지구를 규모별로보면 35千坪 미만이 82.1%인 23개 지구이고 35千坪 이상은 17.9%인 5개 지구에 불과하여 비교적 농공지구의 규모가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한편 농공지구의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中心都市와의 거리를 살펴보면〈表3-4〉와 같다. 즉 농공지구의 위치선정 요령에 의하면 가급적 농공지구를 農村定住生活圈의 中心都市에 선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6년까지 선정된 34개 농공지구를 당해 市郡의 中心地,즉시군청소재지로 부터 거리별로 살펴보면 4~8㎞와 1~2㎞가 각기 38.2%

表 3-3 貸工地區의 指定規模

단위:坪,%

	15千坪	15 ~ 25	25 ~ 35	35 ~ 45	45 千坪 이 상	st
地 區 數	3	13	7	1	4	28
	(10.7)	(46.4)	(25.0)	(3.6)	(14.3)	(100.0)
指定面積(A)	38,723	239,654	209,091	36.250	194,172	717,890
	(5.4)	(33.4)	(29.1)	(5.0)	(27.0)	(100.0)
農耕地面積 (B)	23,464	158,400	76.363	22,000	42,864	323,090
	(7.3)	(49.0)	(23.6)	(6.8)	(13.3)	(100.0)
農耕地포 함비율 (B / A·100)	60.6	66.1	36.5	60.7	22.1	45.0

및 32.4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 ㎞미만은 저혀 없다.

이상의 분석에서 農工地區 分布의 특징은 市郡의 中心地에서 $1 \sim 2 \, km$ 떨어지 주변 인접지역과 4~8㎞이상 상당히 격리된 지역이 동시에 選好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市郡에서 농공지구의 위치를 선정할 때 地價, 用地確保의 용이성, 首都圈이나 上位都市 및 고속도로 인터첸지 인 접지역 등 교통이 편리한 곳, 기타 시군의 均衡發展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시군의 농공지구의 규모결정 및 위치선정 결과는 市郡 나름 대로의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로 이해 할 때 각기 그에 합당한 이유를 가 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지역이 공통적으로 한 곳에 지정상한선 규모까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적으로 소 규모 공단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위치의 선택과 규모결정 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데 大規模 즉 上限線 까지 한 곳에 지정하는 것과 개발가능면적을 小規模로 여러 곳에 분산입 지시키는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表3-5〉와 같다.

			1 km 미만	1 ~ 2 km	2 ~ 4 km	4~8 km	8 k교 이상	āt
地	區	數	0	11	3	13	7	34
	(%)		0.0	32.4	8.8	38.2	20.6	100.0

表 3 - 4 農村中心地로부터 거리별 農工地區의 分布

表 3 - 5 農工地區 規模에 따른 長短點

大 規 模(例:郡別10萬坪 1個)	小規模(例:郡別2萬年5個)
- 工業用地 確保困難	- 工業用地 確保容易
- 농경지의 과도한 잠식 우려	- 농경지 잠식의 최소화
- 入住業體 50%규정에 의한 사업	- 입주업체 50%確保가 용이하기
착수 지연	때문에 사업의 신속한 착수가능
- 현지 취업자들의 출퇴근 불리	- 현지 취업자들의 출퇴근 용이
- 市郡内의 거점개발	- 市郡内의 均衡開發
- 規模의 經濟에 의한 사업비 절감	- 規模經濟이하 규모에 의한 사업비 과다

農工地區를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 예를 들어 郡當 10 만평 규모의 농공지구를 1개지역에 조성할 경우 2 만평 규모의 小規模工團을 5개지역에 분산개발하는 것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즉,大規模 農工地區를 造成할 경우:첫째, 小規模로 하는 것 보다 집단화된 工業用 地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農地나草地, 林地등의 과도한 잠식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둘째,市郡內에서의 거점개발 형태가 되므로 시군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현지 취업자들의 출퇴근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세째,현행입주업체의 신청용지가 지정면적의 50%를 초과하여야만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사업의 착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단점을 안고 있으나 대규모 공단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規模의 經濟가 작용하여 사업비 특히 진입도로, 통신, 전기, 용수시설등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의 절감효과와 農村 거점도시의 집중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농공지구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하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이들 장 단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규모결정과 위치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조성사업비와 관련하여 과연 規模의 경제가 나타나는지? 또한 이들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절감을 위해서 규모와 위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중심도시와의 거리별로 사업비 차이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또한, 시군과 입주업체에 대한 의사조사에서 밝혀진 농공지구의 규모 및 위치결정방법들을 살펴 봄으로써 농공지구의 규모와 위치에 대한 合理的인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2. 農工地區 開發의 事業費用 分析

농공지구의 규모 및 위치결정에 있어서 地形, 地質 등 自然的인 條件이 같고 交通條件이 비슷하다면 결국 농공지구 개발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규모와 위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사업비의 최소화는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초기의 고정투자를 출여춤으로써 초기의 자금수요를 줄여출 수 있기 때문에 농공지구에의 입주를 촉진시켜 줄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지구조성의 주체인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事業費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84년에 지정, 조성한 7개 농공지구와 '85년에 예정지구로 지정한 21개 지구 중에서 調査設計을 완료한 8개 농공지구의 사업비를 분석하여 이들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나 중심지와의 거리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規模나 位置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 農工地區 事業費의 原價構成

농공지구 개발 사업비는 用地買收 및 補償費와 地區造成費, 進入道路費, 附帶施設費,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비와 관리, 잡지출 등으로 구분된다. 분석대상인 '84 지정 7개 지구와 '85 지정 8개 지구의 사업비의 구성항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지구의 사업비를 비용항목별로 살펴보면 〈表3-6〉과 같다. 즉, '84 지정('85조성) 7개지구의 경우 137,219 坪에 5,658 百萬원이 소요됨으로써 평당 46.0 千원이 소요된데 비해 '85지정('86조성) 8개지구는 274,300坪에 14,939百萬원이 소요되므로

表 3 - 6 農工地區 造成費의 原價構成

단위:천원

	'85 조성지구(7)		'86 조성	지구(8)	總	計(15	개 地區)
	計	平常	ät	平 當	計	平當	構成費
토지매입및보상비	1,233,246	10.0	3,633,145	13.2	4,866.391	12.2	23.6%
지 구 조 성 비	2,634,422	21.4	5,495,098	20.0	8,129,520	20.5	39.5
진 입 도 로 비	414,709	3.4	1,682,981	6.1	2,097,690	5.3	10.2
부 대 시 설 비	849,318	6.9	3,331.284	12.1	4,180,602	10.5	20.3
조 사 설 계 비	236.407	1.9	396.808	1.4	633,215	1.6	3.1
공 사 감 리 비	184,556	1.5	262,860	1.0	447,416	1.1	2.2
관리 • 잡지출	105,425	0.9	137,208	0.5	242,633	0.6	1.2
하 및 평 균	5,658,083	46.0	14,939,404	54.5	20,597,487	51.8	100.0

써 坪當 51.8 千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산출되는데 이들 坪當事業 費의 차이는 부대시설의 포함정도에 의한 것으로 '85 자정지구의 부대시 설에는 외곽울타리, 조경 및 共同施設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15개지구의 평당 사업비를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용지매수, 보상 및 이를 위한 관리비등 토지매입 및 보상비가 12.2 千원(23.6%),토 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地區內 도로 및 배수시설, 조경,공 동이용시설, 기타 지구내 구조물과 사업기간중 융자부분에 발생이자를 포 함하는 地區造成費가 20.5 千원(39.5%) 지구내 간선도로와 진입도로 개 설 및 이에 필요한 공사감리비 및 관리, 잡지출을 포함하는 進入道路費가 5.3 百원(10.2%), 지구외 배수시설, 전력, 가로등, 통신 및 용수시설비 를 포함하는 부대시설비가 10.5 千원(20.3%), 그밖에 조사설계비, 공사 감리비 및 관리, 잡지출이 3.3 千원(6.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조성비와 토지매입 및 보상비, 부대시설비 등 농공지구 개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결국 사업비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는: 첫째, 地區造成費을 절감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둘째, 얼마나 싼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세째, 地上物補債費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째, 進入道路, 電力, 通信施設費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い. 規模別 坪當 孕菜受 比較

농공지구의 규모별로 사업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연 농공지구 조성에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市郡地域에서 농 공지구의 適正規模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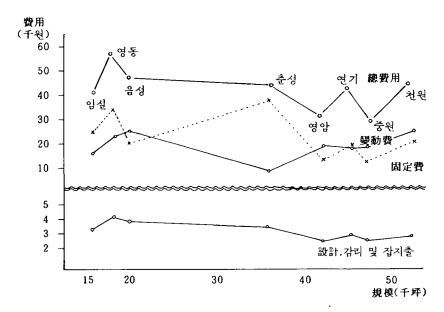
따라서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規模經濟를 파악하기 위해 奸當事業費를 固定費와 變動費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表3-7〉 및 〈闞3-1〉과 같다. 다만 여기서 사용한 原資料는 農業振興公社가 설계한 '85 지정 8 개지구를 대상으로 공통적인 사업비목에 한정 하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分讓價나 事業費를 절감하기 위해서 각기 상이한 설계를 하였지만 비교적

表 3-7 8 個点工地區의 坪當專業費 比较

단위 : 원

	춘성	중 원	영암	평 평	음 성	천 원	연 기	임 실
造成規模(坪)	34,800	46,47 0	41,814	18,557	20,098	51,964	44,982	15,615
變動費(토지매수, 시공)	9,685	20,351	19,699	23,875	24,924	25,283	19,243	15,707
固定費 (부대시설비)	35,802	12,211	12,762	35,466	18,961	20,522	19,942	24,958
(설계, 감리비등)	(3,509)	(2,338)	(2,341)	(4,111)	(3,830)	(2,684)	(2,967)	(3,440)
計	45,487	32,562	32,461	59,341	43,885	45,810	39,815	40,625

間 3-1 地域別 費工地區의 坪當 事業受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서 지구의 규모변동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變動費에는 토지매수비와 지구조성비 중 施工費만 포함시켰으며 지구의 규모변동에 따라 직접 변화하지 않는 固定費에는 간선도로를 포함한 진입도로비, 집수탱크설치비를 포함한용수시설비, 地區內外의 排水施設費, 가로등 설치를 포함한 電氣施設費및 通信施設費와 기타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와 관리, 잡지출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들 고정비 중에서 비교적 규모변동에 따라 최소한으로 변하

는 附帶費用의 성격을 갖는 조사설계비와 공사감리비, 관리비 및 잡지 출 등 지구의 규모와 관계없는 항목을 분석의 편의상 순수 고정비로 재분류하였다.

《表 3 - 7》에서 비교적 지구규모가 큰 중원, 연기, 영암의 경우 평당사업비는 각기 32,562원, 39,815원, 32,461원 등인데 비해 규모가적은 임실과 영동은 40,625원과 59,341원으로 규모가 클 수록 평당사업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固定費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원, 연기, 영암의 경우 調査設計費 등을 포함한 固定費가 평당 12千~19千원인데 비해 임실, 영동 등은 25千~35千원으로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고정비 중에서도 설계, 감리비 및 관리 잡지출은 중원, 연기, 영암 등이 2.3千~2.9千원 水準인데 비해 임실, 영동은 3.4~4.1 千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모와 사업비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업비와 지구규모를 단순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式 (1)~ (3)에 의하면 총비용과 고정비 및 調査設計費 모두가 규모가 커질수록

徳平均費用(ATC) =
$$52.531$$
1 - 0.295 S (1) (6,651) (-1,374) $R^2 = 0.239$

平均固定费(AFC) =
$$33.46\stackrel{?}{1.5}$$
 = 0.317 S (2) (4,058) (-1.417) $\mathbf{R}^2 = 0.251$

단, S는 規模(坪)

감소하는 경향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설계감리 및 관리 잡지출(FCA)를 제외하고는 유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하면, 農工 地區의 造成에 있어서 一定規模(약15만경)까지는 규모가 커진다 고 해서 평당 地區造成 原價가 크게 절감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이는 농공지구 조성원가의 절감이 규모의 擴大 보다는 다른 요인, 예를 든다면 토지매입비의 절감이나, 지구조성비의 절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러나 현재 農工地區에 대한 짧은 歷史, 資料不足 등으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충분한(sufficient statictics) 結論을 推論할 수는 없다).그러나 設計, 감리비 등의 경우(3)式에 의해 지구규모의 변화가 사업비를 약 69.8%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증가에 따라이 부분의 비용의 절감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농공지구 개발사업비에 規模 이외의 요인 즉 당해지역의 地形이나 地質, 기타 물리적인 立地條件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따라서 농공지구의 조성시 조성원가의 절감을 위해서는 이 부분의 원가절감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推論된다.

다. 거리별 坪當 事業費 比較

農工地區開發事業은 入住申請業體 중에서 適格判定을 받은 業體의 분양 신청 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50%를 초과해야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어서 首都圈이나 大都市 인접지역 및 농촌중심도시 등 비교적 交通與件이 유리한 지역에서 좀더 빠른 속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84~85 지정 農工地區 및 農工地區 豫定地區 15 개를 대상으로 서울로부터 거리별로 3개그룹으로 구분하여 농공지구의 규모 및 事業費를 살펴보면 〈表3-8〉과 같다. 즉 15개 지구를 서울에서 부터 당해 농공지구까지 상대적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5 개지구씩 각기 I~II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들 그룹의 평균 地區面積과 坪當事業費를 비교하면 비교적 서울에서 가까운 1 그룹의 경우 지구당 약 35 千坪의 농공지구를 지정한데 비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III그룹에서는 약20 千坪에 불과하여 서울에서 거리가 가까울 수록 개발면적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坪當事業費 비교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I 그룹이 비그룹에 비해서는 坪當 用地買收費 및 補償費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서울 隣近地域의 전

•	平均距離	地區當面積	坪當事業費	坪 當 用地 買收 以補償	坪當資	金支援
	(<i>k</i> =)	(4학) (원	(원)	(원)	補助(원)	融資(원)
1	93.6	34,939.6	53,363.6	11,972.8	20,683.4	32,680.2
H	145.8	24,388.0	58,983.0	14,517.6	17,353.0	41,630.0
M	260.8	20,126.0	41,770.6	9,131.8	16, 203.2	25, 5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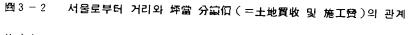
表3-8 서울로부터 거리별 農工地區 開發面積 및 坪當專業受

註: 【그룹 해당地域:춘성,천원,연기,진천,공주 【그룹 해당地域:횡성,음성,영동,중원,임실 【[그룹 해당地域:남원,영천,함평,함양,영암

체 사업비를 다소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록 서울에서 거리가 먼 Ⅱ그룹이라 하더라도 地方都市 혹은 農村中心都市와의 거리 여하에 따라 地價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울과의 거리와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체 사업비중 融資로 지원되는 用地買收 및 補價費와 地區造成施工費를 제외한 정부 補助金이 서울에서 가까운 I 그룹에서 평당 약21 千원인데 비해 Ш그룹에서는 16 千원 水準으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 수록 坪當補助金이 오히려 적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일 수록 개발면적이 크다는 사실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대도시 인근의 개발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정부로 부터 오히려 많은 보조를 통한 지원혜택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행의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보조율이 位置나 규모에 관계없이 用地買收 및 施工費의 20% 附帶施設費의 100%씩을 균등하게 보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立地條件이불리한 落後地域이나 서울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의 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정된 移轉對象業體나 신규 創業體들이 농공지구 입주시용지의 분양가격이 같거나 혹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편중해서 立地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낙후지역이나 농촌 배후지역에서는 入住業體를 確保하기 곤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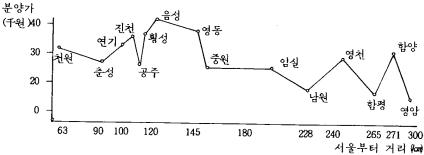


表 3 - 9 ・ 貸村中心都市로부터 거리별 農工地區 開發面稅 및 坪當學業費

	坪均距離	地區當面 樹	坪 當 事 業 費	坪當 用 地 買收以補償	坪 當 資 補 助	金支援融資
ī	(<i>ka</i> r) 2.0	(坪) 17,974.6	(원) 59,968.4	(원) 16,897.2	(원) 17,108.6	(원) 42,859.4
П	9.8	28,867.4	46,394.2	8,551.0	19,861.6	26,532.6
	21.2	32,611.6	47,754.6	10,174.0	17,268.4	30,486.2

註:【그룹해당地域: 횡성, 전천, 함양, 영동, 음성 【그룹해당地域: 함평, 연기, 공주, 영앆, 임실 【그룹해당地域: 영천, 충원, 춘성, 남원, 천원

되며 이는 入住業體의 신청면적이 指定面積의 50%를 초과해야 만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50% 제한 규정에 의해 낙후지역의 농광지구 개 발면적을 축소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농공지구의 위치를 농촌충심도시 즉 市나 郡廳所在地로 부터거리별로 살펴보면 〈表 3 - 9〉와 같은데 이 역시 中心都市, 즉 市 또는郡廳所在地로 부터 당해지역의 農工地區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5개지구씩 I~Ш그룹으로 구분해보면 농촌 중심도시에서 거리가가까운 지역일 수록 개발면적이 적은 반면 개발사업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심지에서 가까운 지역일 수록 坪當地價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이해된다. 〈表 3 - 9〉에서 Ⅱ그룹과 Ш그룹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천원지구 등의 경우 비록 농촌중심지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천안시와 가깝 기 때문에 坪當地價가 높은 地域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事業費分析을 통해 地區當 규모 및 지구의 位置 모두 事業費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농공지구 조성에서의 規模의 經濟性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農工地區의 규모가 擴大됨에 따라 坪當地區造成費의 절감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土地買收 및 土地造 成費 등 變動費의 성격을 갖는 비용이 농공지구개발사업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농공지구 개발사업비의 24 %를 차지하는 用地買收 및 補償費를 좌우하는 位置와 事業費의 分析에서는 서 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수록 지구면적과 평당사업비는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난데 비해 농촌중심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지구면적은 적고 사업비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事業主體인 市郡이 농 공지구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할 때 개발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首都圈 인근 지역의 경우 다소 地價가 높더라도 入住業體의 확보가 용이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큰 농공지구를 개발하고 있으나 同一 市郡內 에서는 地價가 비싼 中心地 보다는 배후지역의 地價가 헐한 地域을 선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농공지구의 위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발여건이 유리한 수 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지역이 여타의 농촌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낙후지역의 농공지구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 農工地區의 位置 및 規模에 관한 意思分析

農工地區의 위치선정 및 規模決定은 기존의 工業團地와는 달리 市郡의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주관하에 스스로 당해지역의 발 전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들의 立地 및 規模에 관한 意思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地域區分	位置選定 이유	해 당 市 郡 敷
	勞動力 確保가 용이한 곳	9 (12.7)
市郡中心地	農村中心都市의의 接近性	7 (9.9) } 21 (26.4)
	都市計劃상의 工業地域	5 (7.0)
주변, 배후지역	用地確保가 용이한 곳	16 (22.5) } 30 (38.4)
	造成事業費가 적은 곳	14 (19.7)
	交通이 펀리한 곳	14 (19.7)
共 通	動力引入이 용이한 곳	3 (4.2) 20 (25.6)
大 超	工業用水가 풍부한 곳	2 (2.8)
	전화가설이 용이한 곳	1 (1.4)
āt	-	71 (1000)

表 3 - 10 市郡의 現在 殷工地區 위치선정 이유*

* 28個 市郡에 대해 각기 3가지 이유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市郡이 1~2개만 應答.

먼저 '84 ~ '85년에 농공지구 및 농공지구 豫定地區로 지정된 28개市郡에 대해 현재의 農工地區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문의한 결과 用地確保가 용이한 곳과 開發事業費가 적게 드는 곳, 交通이 편리한 곳 및 勞動力 確保가 용이한 곳 등을 각기 선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中心地와 背後地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表 3 - 10 〉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動力引入과 전화가설이 용이하며 工業 用水가 풍부한 지역이면서 勞動力確保 등이 용이한 市郡中心地選好(26.4%)보다는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개발사업비가 적게 드는 주변 배후지역(38.4%)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市郡의 주변·배후지역 位置選定 이유는 기본적으로 入住業體의 確保가 용이한 곳, 즉 入住業體들의 立地選好度를 反映한다고 볼 수있다. 일반적으로 입주업체들이 立地選定時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立地因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세가지를 81개 入住業體에 문의한 결과는 〈表 3 - 11〉과 같다. 즉, 교통조건과 노동력조건이 각기30.0% 및 27.2 %로 가장 중요한 인자로 검토되고 있으며 그 밖에 道路 및 用

順位	立 地 因 子	應答數	構 成 比
1	交 通 條 件	73	30.0
2	勞 動 力 條 件	66	27.2
3	道路條件	27	11.1
4	用 地 條 件	23	9.5
5	動力	14	5.8
6	工 業 用 水	14	5.8
7	支援機關과의 接近性	11	4.5
8	通信條件	9	3.7
9	市場、條件	5	2.1
10	기타	1	0.4
計	_	243	100.0

表 3 - 11 瓜工地區 入住業 2 立地因子別 選好

地條件, 動力 및 工業用水條件 등이 企業家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입주희망업체들의 立地選好를 기초로 하여 農工地區의 位置를 選定하는 것이 工業用地의 需給을 조절하는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판단되다.

한편 農工地區의 規模에 관한 市郡의 意思를 분석해 보면 조사대상 28 개 市郡에 농공지구의 개발면적은 지구당 평균 25,639 坪인데 이들 市郡에 대해 기존 농공지구 규모의 適合性 여부를 문의한 결과 "적당하다"는 시군이 16 개(66.7%), "적다"는 시군이 12 개(33.3%)로 각기 應答함으로써 현재의 농공지구 규모가 다소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농공지구의 확장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확장계획이 없다"는 시군이 9개(37.5%)인데 비해 "확장계획이 있다"는 시군은 19개(62.5%)나 되어 전반적으로 규모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앞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 19개 市郡에 대해 장래 농공지 구의 개발방법을 문의한 결과는 〈表 3 - 12 〉와 같이 2 ~ 3 반평 규모로 2 ~ 3 곳(52.6 %) 혹은 4 ~ 5 만평 규모로 1 ~ 2 곳(36.8 %)를 많이 희

朗	發	方	法	應答市郡數	構成比
2 ~ 3 만동	규모로	2~3天	에 개발	10	52.6
4 ~ 5 만동	구모로	1~2天	에 개발	7	36.8
10 만평	규 모로	1 곳에	개 발	2	10.5

表 3 - 12 農工地區 開發方法(規模, 位置)에 대한 市郡의 意思

表 3 - 13 - 爲工地區의 適正規模에 관한 入住業體의 意思

지구당규모 사업형태	1~3만평	3~5 만평	5~10 만평	10 만평이상	ät
創 業	3 (14.3)	13 (61.9)	5 (23.8)		21 (100.0)
移轉	8 (16.7)	17 (35.4)	21 (43.8)	2 (4.2)	48 (100.0)
分工場	2 (16.7)	6 (50.0)	4 (33.3)	-	12 (100.0)
	13 (16.0)	36 (44.4)	30 (37.0)	2 (2.5)	81 (100.0)

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농공지구 입주업체들에 대한 개발방 법조사에서도 매우 유사하계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表 3 - 13〉과 같다.

즉 81개 입주업체조사에서 개별 기업가들이 보는 농공지구의 適正規模는 3~5만령이 36社(44.4%)로 가장 많은 업체들이 응답하였으며 그밖에 5~10만령이 30社(37.0%). 1~3만령이 13社(16.0%) 등으로 응답함으로써 市郡當 개발 상한면적을 개발하는데는 市의 경우 5~10만령 규모를 2~3곳에 개발하는 형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공지구의 규모에 있어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와 같이 다수의 소규모 형태 농공지구를 선호하는 것은 必要勞動力의 確保面에서 小規模 工團이 보다 有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따라서 農工地區의 開發에 있어서 小規模工團(군단위지역 기준)을 2~3곳에 개발하는 것이 入住企業들의 勞動力 確保가 보다 용이하는 점과 당해市郡의 균형개발, 用地確保의 용이성등의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第4章

農村技能人力의 需給 分析斗 住民 就業擴大 方案

농촌지역에서 제조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들이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과연 勞動力確保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즉필요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稼動中인 農工地區 入住業體들이 심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는데서도 문제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住民들 간에는 비록 현지에 工場이 立地하여도 실제 주민들의 취업증대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농촌지역에 있어서 工業勞動力需給實態는 어떠한가? 또한 공장취업희망자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 엇을 뜻하며, 어떻게 하면 이들 지역주민들의 농공지구 취업을 확대할 수 있을것인가?

여기서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雇傭計劃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農工地區 就業意思分析을 통해 농촌지역의 노동력수급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주민들의 취업확대방안을 모색해보았는데 아직까지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착수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稼動業體가 많지 않아서 다만 意思分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1. 農村勞動力의 需給 分析

農工地區를 통한 농촌공업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은 얼마나 묄것인가? 이는 농촌공업의 업체당 필요노동력과 농공지구의 개발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농촌공업의 업체당 노동력규모는 原單位개념으로 旣 파악된 자료가 있으나 現地雇傭規模는 밝혀져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70개 농공 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事例調査를 통해 입주업체의 고용계획과 이들이 필요로하는 資格要件 및 農家口員雇傭에 대한 기업측의 意思를 분석 하였다.

가. 農工地區 入住業體의 雇僱計割

농공지구의 개발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需要規模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된 81개 업체자료중 이용가능한 70개 업체의 노동력 조달계획은 <表 4 - 1 >과 같다. 즉 70개 업체에서 7,325 名의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업체당 약 105 名의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업체당 약 105 名의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인데 이들을 職種別로 보면 管理・事業職이 9명(8.2%),技術者가 7명(7.2%), 熟練工 및 半熟練工이 57명(54.9%), 단순노무자가 31명(30.0%)로 숙련공 및 반숙련공 등 技能人力과 단순노무자가 약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性別로는 男子가 49명(46.5%), 女子가 56명(53.5%)으로 여성 노동력을 다소 많이 수요하고 있는데 남자노동력의 경우 관리사무직, 기술자 및 단순노무자의 직종이 많은 반면 여자노동력은 특히 반숙련공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 고용자들 중 농촌(農工地區소재邑 또는 市포함)현지에서 조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現地雇傭者數는 전체 종업원의 약 75.1 %에 해당하는 5,498 명으로 업체당 평균 79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현지고용자들을 직종별 로 살펴보면 관리사무직과 기술자 및 숙련공의 경우 각기 업체당 5.4 명, 3.7

	總	雇	協	現	地 雇	傭	現地	雇傭	比 牽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ī†
管理事務職	420 (12.3)	179 (4.6)	599 (8.2)	235 (10.8)	144 (4.3)	379 (6.9)	56.0	80.4	63.3
技 術 者	374 (11.1)	154 (3.9)	528 (7.2)	149 (6.8)	110 (3.3)	259 (4.7)	39.8	71.4	49.1
熟練工	934 (27.4)	1,044 (26.7)	1,978 (27.0)	485 (22.2)	725 (21.9)	1,210 (22.0)	51.9	69.4	61.2
半熟練工	652 (19.1)	1,395 (35.6)	2,047 (27,9)	521 (23.9)	1,165 (35.2)	1,686 (30.7)	79.9	83.5	82.4
단순노무자	1,043 (30.6)	1,158 (29.6)	2,201 (30.0)	806 (36.9)	1,138 (34.4)	1,944 (35.4)	77.3	98.3	88.3
合 計	3,408	3,917	7,325	2,184	3,314	5,498	64.1	84.6	75.1

表 4-1 总工地區 入住獎公의 总目的 및 現地住民 呂伯針部

명 및 17.3 명으로 현지고용 비율은 49~63 % 수준으로 상당 부분을 外地에서 고용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반숙련공과 단순노무자의 경우 각기 82.4 % 및 88.3 %인 업체당 24 명과 28 명씩을 현지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어서 비교적 임금이 싼 低級技能을 가진 종업원, 그 중에서도 특히여자노동력의 현지종업원 고용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농촌 현지에서 훈련원 高級技能人力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농공지구 입주업체 자체가 비교적 값싼 低級勞動力을 선호하는 中小企業證들이라는 점에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주민들의 농의취업 확대를 통한 農外所得增大를 위해서는 一次的으로企業에서 多量으로 必要로 하는 이들 低級勞動力을 여하히 供給할 것인가가 정책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며, 또한 二次的으로는 確保된 이들 低級勞動力을 高級技能人力으로 어떻게 養成함으로써 현지고용 비율을 높여갈 것인가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나. 必要 勞励力의 資格要件

이상에서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雇傭計劃分析을 통해 농촌 노동력 需要

의 總量規模를 살펴보았다. 즉,업체당 평균 105 명의 종업원 중 75.1 %에 해당하는 79명을 현지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어서 노동력수요의 절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결코 적지않은 노동력을 농촌지역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는 단지 노동력수요의 총량규모만 암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勞動力의 質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물론 농공지구 입주업 체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資格要件은 業種이나 職種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70개 입주업체에 대한 의사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혼인상태를 보면 旣婚者가 48.1%, 未婚者가 35.9%로 旣婚者를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결혼상태는 무관하다는 반응도 전체의 16.0%나 되어 사무직 여자노동력 등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유동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취업대상자의 연령계층에 있어서도 혼인상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유동적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그중에서도 20~40세 연령층을 선호하는 경향은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취업대상자의 학력별 자격요건을 보면 高卒 이상이 52.8 %로 가장 많고 그밖에 中卒이 30.1 %, 專門大卒 이상 9.8 %, 등으로 응답하 였으며 단순노무자를 중심으로 학력과는 무관하다는 응답도 7.3%나 된다.

이상과 같은 필요노동력의 資格要件은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需要勞動力의 質을 규정하는 것으로 農村工業開發이 지역주민들의 就業擴大와 직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하히 이상의 자격을 갖춘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다. 殷家口員 雇協에 대한 企業의 反應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農工地區의 개발은 농촌지역주민들의 공 장취업, 특히 農家口員의 農外就業機會의 확대를 통해 農外所得을 증대하 므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地域의 均衡開發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 서 농공지구 개발의 성패는 현지 주민중에서도 특히 農家口員의 雇傭問題 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농가구원의 농외취업 은 農外所得增大效果 이외에도 農業構造改善이라는 중요한 農政課題를 동 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政策手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家口員들은 기본적으로 農事라는 독립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 農業生產活動의 구성원으로 農業勞動需要의 季節性 등 농업 자체가 안고 있 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非農家出身의 노동력과는 다소 상이한 성격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의 노동력수요측면에서 자기고유의 자영사 업을 하고 있지않는 非農業分野의 一般 勞動者와는 구별된다.

企業家들의 농가구원 고용에 대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農工地區 入住 業體에 대해 농가구원 고용에 대한 의사를 문의한 결과는 <表4-2> 와 같다. 즉 應答業體 80개 중 농가구원을 선호한다는 업체는 14개로 17.5 %에 불과하며 농가구원이나 또는 비농가구원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는 企業이 30업체(37.5%), 비농가구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5 업 체(45.0%) 등으로 밝혀져 대체로 농가구원을 기피하는 반면 비농가구원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	-2	正拉云	を記録	山輿	RIMM	내안	道好	単 合		
	음식	섬유	종이	나무	화학	제1차	비금속	꺄	71 tr	計
	료품	의복	제품	제품	제품	급속	광 물	장 비		n1
농가구원선호	-	3	1	ı	1	2	1	1	4	14(175)
무차별적선호	-	4	3	1	4	_	1	6	11	30(37.5)
비농가구원선호	3	5	1	1	4	-		6	16	36(45.0)
계	3	12	5	3	9	2	2.	13	31	80(100.0)

^{*} 무응답 1 개업체 제외.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해서 농가구원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51개 업체가 이에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많을 것으로 염려된다."는 것이 39.2%(20업체)로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직업이동이나 포기 등이 많은 것으로 염려된다."가 27.5%(14업체) "직업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하기때문이다."가 21.6%(11업체), 그밖에 "대체로 농가구원들은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응답이 5.9%(3업체)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1개 以上의 직업을 가진 노동자가한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직업에 대한 애착심이 적고 직업의 이동이 심하다는 일반적인사실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農家口員 雇傭에 대한 기업가들의 반응은 사뭇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려 45%에 해당하는 업 체들이 같은 기술수준이라도 비농가구원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농가구원들의 농촌공업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의 기술교육 이외에도 產業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職業倫理 등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다.

2. 農工地區에 대한 勞動力供給 可能性 分析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 農工地區를 중심으로 한 工業開發이 이루워질 경우 이들 부문에 취업 가능한 인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와같은 질문은 농촌공업 개발이 곧 현지 주민들의 工場就業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사업목적의 달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공업 부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취업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특히 농공지구의 경우 아직까지 가동하고 있는 入住業體가 적어서 이에 대한 실증조

사로도 거의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들의 농공지구 就業意思를 조사·분석하므로써 개략적이나마 농공지구에 대한 勞動力 供給可能性을 살펴보았는데 조사방법은 忠北鎮川郡을 事例地域으로 설정하고 농공지구를 중심으로 한통근거리별로 3개 부락씩 모두 9개부락의 270호를 무작위추출하여 가구워에 대한 취업의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段工地區 就業希望者

조사대상인 270 호의 가족수는 남자 580 명, 여자 535 명으로 1,115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就業對象이 될 수 있는 15~59세 연령층의 가족수는 남자 390 명, 여자 324 명 등 714 명으로 가족수의 64.0 %인 호당 2.6 명이다. 이들 취업대상자 농공지구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50 명으로 인구의 13.5 % 및 취업대상 연령층의 21.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就業意思는 각기 그들이 처한 社會經濟的與件에 따라 달리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출퇴근의 용이성과 접근성 여부를 나타내주는 農工地區까지의 거리,工場就業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新地規模 등이 취업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들 요인중 먼저 농공지구까지의 거리별로 就業希望者를 살펴보면 도보통근이 가능한 농공지구 인근지역 주민의 경우 취업대상자의 약11.5%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비해 차량을 이용하여 30분이내에 도달할 수있는 지역주민의 경우 취업대상자의 25.4%,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취업대상자의 26.8%가 각기 農工地區 就業을 희망함으로써 출퇴근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은 주민들이 취업을 희망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오히려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들이 농공지구 취업에 적극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4-3>에서 살펴 본 이와같은 결과는 조사대상지역인 鎭川郡의 농 공지구가 邑에 위치하고 이 지역으로 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상대적

表 4-3 爲工地區로부터 거리별 就業意思

단위 : 인, %

	人口數	就業對象者數	就業希望者數	就業希望者	
	(A)	(B)	(C)	C/A	C/B
도보통근권	401(36.0)	252(35.3)	29(19.3)	7.2	11.5
차량 30 분이내권	364(32.6)	205(28.7)	52(34.7)	14.3	25.4
차량 30 분이상권	350(31.4)	257(36.0)	69(46.0)	19.7	26.8
ā †	1,115(100.0)	714(100.0)	150(100.0)	13.5	21.0

表 4~4 家口主의 職業別 農工地區 就業意思

單位:人,%

職 業		人口數		數	就業對象者數 就業希望者數		就業希望者比		
~~^ 			_	(A)		(B)	(C)	C / A	C / B
農		業	8	62 (7	77.3)	558 (78.2)	124 (82.7)	14.4	22.2
非	農	業	1	77 (1	5.9)	116 (16.2)	10 (6.7)	5.6	8.6
無		騒		76 (6	5.8)	40 (5.6)	16 (10.7)	21.1	40.0
	計		1, 1	15 (1	00. Ø	714 (100.0)	150 (100.0)	13.5	21.0

으로 농업 이외의 취업기회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家口主의 職業別로 就業意思를 살펴보면 <表 4 - 4 >와 같이 나타났다. 家口主의 직업이 상업이나 서비스업, 공무원 회사원 등 非農業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대상자의 8.6 %만 취업을 희망하는데 비해 農業從事者는 22.2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無職인 경우에는 취업대상자의 40.0 %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농공지구에 취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취업의사는 가구원을 부양하기 위한 안정적인 所得額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 하겠다.

部落內에서 生活水準別 농공지구 취업의사는 <表4-5>와 같다. 즉 主觀的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부탁내에서 생활수준이 이웃과 비교하여 上

表 4-5 生活水準別 凝工地區 就獎意思

單位:人,%

	人口數	就業對象者數 就業希望者數		就業希望者比		
	(A)	(B)	(C)	C / A	C / B	
上	187 (16.8)	126 (17.6)	8 (5.3)	4.3	6.3	
中	572 (51.3)	369 (51.7)	61 (40.7)	10.7	16.5	
下	356 (31.9)	219 (30.7)	81 (54.0)	22.8	37.0	
計	1,115 (100.0)	714 (100.0)	150 (100.0)	13.5	21.0	

表 4-6 耕地面和別 瓜工地區 就業意思

單位:人,%

	人口數	就業對急者數	就業希望者數	就業希望者比		
	(A)	(B)	(C)	C / A	C / B	
1,500 坪未滿	432	260	61	14.1	23.5	
1,500~3,000	280	169	53	18.9	31.4	
3,000~6,000	307	215	25	8.1	11.6	
6,000 坪以上	96	70	11	11.5	15.7	
計	1,115	714	150	13.5	21.0	

流層에 속하는 경우 취업대상자의 경우 6.3 %만이 농공지구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비해 中流層에서는 16.5 %, 下流層에서는 37.0 %가 각기 농공지구 취업을 희망함으로써 生活水準이 낮은 계층일 수록 많은 주민들이 농공지구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지표로서 經營地를 기준으로 한 耕地面積 규모별 농공지구 취업의사는 〈表 4 - 6 〉과 같이 경지규모가 적을수록 높은 취업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營農規模가 클 수록 農工地區에 취업할 수 있는 노 동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就業希望者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耕地規模가 작고 生活水準이 낮은 계층일 수록 비교적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

 \$t	業	條	f ‡	就	菜	希	擎	就業意	思	āt
			•••	적	극	소	국	없	음	B 1
生產職	從業員으	로 勤務할	경우	101 (14.1)	57	(8.0)	556(7	7.9)	714(100.0)
現在의	職業을 표	드기해야 할	ŀ 경우	82 (11.5)	55	(7.7)	577(8	0.8)	714(100.0)
月給水	单(男13 电	女 10 만)이	낮 <mark>을</mark> 경우	44 (6.2)	54	(7.6)	616(8	6.2)	714(100.0)
職業訓練	東(3~6)	個月이 必要	한 경우	41 (5.7)	50	(7.0)	623(8	7.3)	714(100.0)
夜間 3	と 休日作	葉이 必要	한 경우	71 (9.9)	57	(8.0)	586(8	2.1)	714(100.0)
		計		339 (9.5)	273	(7.6)	2,688(7	5.3)	3,570(100.0)

表 4-7 就業條件別 就業意思

께 가구수의 職業이 無職이나 農業에 종사하는 경우 기타 非農業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높은 취업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농 공지구까지의 거리별로는 오히려 멀리 떨어진, 즉 비농업취업기회가 제약된 山間奧地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농공지구 취업의사는 주로 안정적인 취업기회 확보를 통한 生活水準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就業意思가 실제 취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입장인 공장측의 구체적인 就業條件과 일치되어야 하는데 몇가지 가설적인 就業條件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농공지구 취업의사는 〈表 4 - 7〉과 같다. 15~59세의 연령층에 있는 就案對象者 714명 중에서 먼저 생산직 종업원으로 근무할 경우 22.1%인 158명이 취업을 희망하는데 비해 현재의 직업을 포기하고 轉職이 필요한 경우에는 19.2%, 야간 또는 休日의 追加作業이 필요한 경우 17.9%, 그밖에 月給水準이 男子 13만원,女子 10만정도이면 13.8%, 기술습득을 위해 3~6개월의 職業訓練이 필요한 경우 12.7%가 각기 농공지구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就業條件別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와같은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취업여부는 생산직 종업원으로 야 간작업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것보다 가정을 떠나 별도의 직업훈련을 받거 나 월급수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表 4-8 瓜工地區의 勞助力 网络提定(但川郡 草例)

單位:名

			雅			В-	— А	$\frac{B}{A} \times 100 (\%)$	
			代案I	代案II	供給(B)	代案I	代案II	代案I	代案II
總	從	業 員	1,084	3,500	7,666	6,582	4,166	702.2	219.0
		男 子	504	1,628	3,580	3,076	1,952	710.3	219.9
		女 子	580	1,872	4,086	3,506	2,214	704.5	218.3
現	地	從 業 員 1)	814	2,628	1,633	819	- 995	200.6	62.1
		男 子	323	1,044	763	440	- 281	236.2	73.1
		女子	491	1,584	870	379	- 714	177.2	54.9
年首	年馀制限(20~39세)2		692	2,234	892	200	-1,342	128.9	39.9

代案Ⅰ:既存의 農工地區 16千坪(入住業體 10個, 雇傭計劃 1,084名) 基準. 代案Ⅱ: 郡當 開發上限線 10萬坪(業體當工業用地3千坪,從業員 105名) 基準.

- 1) 需要는 전체 從業員의 75.1%, 供給은 就業希望者의 21.3%適用.
- 2) 20~39세 年陰曆의 勞動力으로 需要는 전체 從業員의 85%, 供給은 就業希望者의 54.7% 適用.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주민들의 취업의사와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고용계획을 근거로 하여 鎭川郡의 事例로 農工地區開發에 따른 勞動力需給推定 결과는 〈表 4 - 8 〉과 같다. 즉, 1985년말 현재 진천군의 인구는 56,784名으로 就業希望率 13.5%를 적용하면 7,666名이 농공지구 취업을 희망하며 이들중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인 관련자격증이나 과거 공장취업경험을 가진 사람은 21.3%인 1,633名으로 이를 진천군에서 공급가능한 노동력 규모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노동력 수요의 경우 기존의 16,026坪 규모의 농공구를 代案 I로, 郡當 開發上限線인 10萬坪 규모를 개발할 경우를 代案 I로 상정하고, 代案 I의 경우 현실 자료인 入住業體 10개, 雇傭計劃 1,084명이 노동력 수요가되고, 代案 II에서는 全國平均水準인 業體當 工業用地 3,000坪, 從業員 105명의 原單位를 적용하며 3,500명이 노동력 수요규모가 된다. 이때

입주업체에 대한 의사조사에서 밝혀진 현지고용비율인 총고용의 75.1%를 적용하면 代案 I 의 경우 814명, 代案 II 의 경우 2.628명을 각기현지에서 조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銀川郡 農工地區의 노동력窯給은 단순히 취업의사를 가진 전체경우에는 代案 I 및 代案 II 모두 供給이 需要를 능가하고 있으므로 취업능력이 반영된 현지 노동력의 수급에 있어서는 현재의 16 千坪 규모의 농공지구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10 만평 규모의 농공지구를 개발한다고 할 때 실제 현지에서 공급가능한 노동력은 수요량의 61.9%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심각한 技能人力의 不足이 예상된다. 더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공지구 취업희망자의 45.3%가 20세미만 혹은 40세 이상으로 대부분 입주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우수노동력(Prime labor)을 제공할 수 있는 20~39세로 연령제한을 할경우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기능인력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10만평규모의 농공지구를 개발할 때 겨우 노동력 수요량의 39.9%만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와같은 추정은 1개 郡을 대상으로 한 의사조사에 지나지 않지만 농공지구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현지 주민들의 就業機會擴大를 통한 農村經濟의 活性化라고 할 때 이들 농촌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훈련을 통한 취업확대는 農工地區開發事業의 成敗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就業希望 勞動力의 種類의 就業形態

농공지구에 就業意思를 가진 주민 150 명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勞動 力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性別로는 남자가 53.3 %인 80 명이며 여자는 46.7 %인 70 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으며, 婚因狀態別로는 66.0 %인 99 명이 결혼하였고 나머지 34.0 %인 51 명은 미혼자들이다.

또한 이들 취업희망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9세가 18명(12.0%) 20~39세가 82명(54.7%) 그리고 40~59세가 50명(33.3%)로 전 체 취업대상 연령계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35세 이 상의 연령층에서 상당수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회망자들의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農業이 76 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밖에 無職이 37명(24.7%), 막노동자 17명(11.3%), 學 生 16명(10.7%), 회사원 3명(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취업희망자의 종류별로 이들이 희망하는 취업분야나 방법, 취업형태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희망업종으로는 섬유의복과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각기 26.7% 및 26.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그밖에 기타제조업이 20%, 화학제품이 12.0% 음식료품이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性別 및 婚因狀態別로 살펴보면 <表 4 - 9 > 와 같은데 남자의 경우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여자의 경우에는 섬유의복제조업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별로는 未婚者들이 기계 및 장비제조업취업을 다소 많이 희망한데 비해 旣婚者들은 섬유의복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취업회망업종을 취업희망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表 4 - 10 >에서 알수 있듯이 섬유의복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음식료품과 비

表 4-9 性別 및 婚因狀態別 就獎希望 獎額

單位:人,%

性別,婚因	性	別	婚因先	大 態 別	āt	
業 種 関係	男	女	未 婚	結 婚		
음 식 료 품	7 (8.8)	9 (12.9)	6 (11.8)	10 (10.1)	16 (10.7)	
섬 유 의 복	2 (2.5)	38 (54.3)	10 (19.6)	30 (30.3)	40 (26.7)	
나 무 제 품	4 (5.0)	2 (2.9)	2 (3.9)	4 (4.0)	6 (4.0)	
화 학 제 품	15 (18.8)	3 (4.3)	8 (15.7)	10 (10.1)	18 (12.0)	
비금속광물	1 (1.3)	_	-	1 (1.0)	1 (0.7)	
기계및장비제조	35 (43.8)	4 (5.7)	18 (35.8)	21 (21.2)	39 (26.0)	
기타제조업	16 (20.0)	14 (20.0)	7 (13.7)	23 (23.2)	30 (20.0)	
計	80 (100.0)	70 (100.0)	51 (100.0)	99 (100.0)	150 (100.0)	

금속광물 및 기타제조업의 경우 비교적 높은 연령층에서, 그리고 나무 및 화학제품과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은 비교적 낮은 연령층에서 취업을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희망 業種을 취업희망자의 職業別로 살펴보면 <表4-11>과 같이 農業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기계 및 장비제조업과 섬유의복업에,無職者의 경우 기타제조업과 섬유의복에, 그밖에 學生이나 막노동자의 경우 섬유의복업과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각기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表 4-10 年餘別 就業希望 幾粒

單位:人,%

業種年齢	15~19	20~24	25~29	30~34	35~39	40~59	āf
음 식 료 품	1(5.6)	2 (9.5)	1 (5.3)	1 (7.7)	3 (10.3)	8(16.0)	16(10.7)
섬 유 의 복	6(33.3)	3 (14.3)	4 (21.1)	3 (23.1)	6 (20.7)	18(36.0)	40(26.7)
나 무 제 품	1(5.6)	2 (9.5)	-	1 (7.7)	1 (3.4)	1(2.0)	6(4.0)
화 학 제 품	3(16.7)	3 (14.3)	3 (15.8)	3 (23.1)	4 (13.8)	2(4.0)	18(12.0)
비금속광물	-	-	-	-	- ;	1(2.0)	1(0.7)
기계및장비제조	7(38.9)	7 (33.3)	9 (47.4)	1 (7.7)	8 (27.6)	7(14.0)	39(26.0)
기 타 제 조 업	_	4 (19.0)	2 (10.5)	4 (30.8)	7 (24.1)	13(26.0)	30(20.0)
f †	18	21	19	13	29	50	150

表 4-11 職業別 就業希望 獎稏

單位:人,%

業種職業	農業	商業	會社員	막勞動者	學生	無酸	āt
음 식 료 품	9(11.8)			3 (17.6)	2 (12.5)	2(5.4)	16(10.7)
	19 (25.0)		1 (33.3)	4 (23.5)	5 (31.3)	11(29.7)	40(26.7)
	4 (5.3)				1 (6.3)	1(2.7)	6(4.0)
화 학 제 품				2 (11.8)	4 (25.0)	1(2.7)	18(12.0)
비 금 속 꽝 물							1(0.7)
기계및장비제조	20 (26.3)		2 (66.7)	5 (29.4)	4 (25.0)	8(21.6)	39(26.0)
기타제조업	13 (17.1)			3 (17.6)		14(37.8)	30(20.0)
計	76	1	3	17	16	37	150

한편 농공지구 취업희망자를 취업희망職種別로 살펴보면 <表 4 - 12 > 와 같은데 먼저 性別로는 남자의 경우 관리사무직과 기술자 및 숙련공과 단순노무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견습공이나 반숙련공으로 취업을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婚因狀態別로는 未婚者의 경우 관리사무직이나 기술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旣婚者들은 숙련공이나 半熟練工 및 단순노무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는 <表 4 - 13 > 및 <表 4 - 14 >에서 볼 수 있 듯이 취업희망자들의 연령과 職業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表 4-12 性別 및 婚因狀態別 就業希望 職種

單位:人,%

p.#	66 :	性	別	婚因	狀態 別	計	
騒	種	男	女	未 婚	結 婚		
管理・	事務職	14 (17.5)	10 (14.3)	18 (35.3)	6 (6.1)	24 (16.0)	
技术	省 者	9 (11.3)	3 (4.3)	6 (11.8)	6 (6.1)	12 (8.0)	
熟	₹ 工	10 (12.5)	6 (8.6)	5 (9.8)	11 (11.1)	16 (10.7)	
見習工,	半熟練工	18 (22.5)	30 (42.9)	14 (27.5)	34 (34.3)	48 (32.0)	
단 순 노	ᆫ무자	29 (36.3)	21 (30.0)	8 (15.7)	42 (42.4)	50 (33.3)	
ı	†	80	70	51	99	150	

表 4-13 年齢別 就業希望 職和

單位:人,%

年 龄	15~19	20~24	25~29	30~34	35~39	40~59	計
管理事務職	9 (50.0)	1	i	-		1(2.0)	
技術者熟練工	2 (11.1)	2 (9.5) 3 (14.3)		2 (15.4)		1(2.0) 4(8.0)	l
が な ユ 見習エリ 半熟練エ		7 (33.3)			12(41.4)		
단순勞 動	2 (11.1)	4 (19.0)	1 (5.3)	6 (46.2)	10(34.5)	27(54.0)	50(33.3)
S t	18	21	19	13	29	50	150

_								т			単位	人,%
嚴	種	_	嚴	業 	農	業	商業	會社員	막勞動者	學 生	無職	āţ
管	理	事	務	職	6(7.9)	_	_	2(11.8)	10(27.0)	6(37.5)	24(16.0)
技		衠		者	4(5.3)	-	1(33.3)	1(5.9)			
熟		練		T.	9(1	1.8)	_	1(33.3)	1(5.9)	1(2.7)	3(18.8)	16(10.7)
見き	II;	半	熟想	ĬΙ		-	1(100.0)	1(33.3)	6(35.3)	18(48.6)	1(6.3)	48(32.0)
단_	순	<u>Jr.</u>	무	者	36(4	7.4)	_	_	7(41.2)	5(13.5)	2(12.5)	50(33.3)
	_	計			7	6	1	3	17	37	16	150

表 4-14 職業別 就業希望 職種

연령별로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관리사무직이나 기술자로 취업을 많이 원하는 반면 고령층으로 갈 수록 見習工이나 半熟練工 및 單純勞務者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청소년들에 비해 고령층 취업희망자의 경우 새로운 기술훈련을 거쳐 職業轉換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막노동자나 學生,無職者 등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관리사무직이나 기술자등 專業的就業이 필요한 職種을 좀더 선호한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즉,이들 취업희망자들의 취업형태를 문의한 결과 常時從業員으로 취업이 전체의 71.3 %로 많은 비증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밖에도 <表 4 - 15 >에서 볼 수 있는것 처럼 季節的就業과 수시취업도 각기 27.3 %와 1.3 %나 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의 勞動力需要의계절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에 지배적인 농업노동의 수요가 농번기와 농한기로 엄격히 구분됨에 따라 대부분 농가구원을 중심으로 한 취업희망자들의 취업형태가 계절적 혹은 수시취업을 희망하게 된것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취업희망자의 현재 직업별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表 4 - 15 >와 같다.

즉,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35.5 %가 계절적 혹은 수시

表 4-15 職 類別 希望就獎 形態

單位:人,%

就業 形態	農 業	商業	會社員	막勞動者	學生	無 職	計
常時就羨	49(64.5)	1(100.0)	3(100.0)	15(88.2)	24(64.9)	15(93.8)	107(71.3)
季節就業	25(32.9)	-	_	2(11.8)	13(35.1)	1(6.3)	41(27.3)
隨時就業	2(2.6)	_ ·	-	-	-	-	2(1.3)
計	76	1	3	17	37	16	150

表 4-16 性別 및 婚因狀態別 希望就獎 方法

單位:人,%

	分	性	別	婚因狀	態別	. <u>ā</u> t	
PHP.	"	男	女	未 婚	結 婚	#1	
離村息	龙莱	3 (3.8)	1 (1.4)	2 (3.9)	2 (2.0)	4 (2.7)	
通動家	北 薬	77 (96.3)	69 (98.6)	49 (96.1)	97 (98.0)	146 (97.3)	
計		80	70	51	99	150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비해 무직자들이나 상업 및 회사직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常時就業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農村工業에 필요한 技能人力의 원활한 需給을 위해서는 專業的就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촌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기능훈련을 강화해 나가되 기존의 농업종사자들의 轉職 또는 專業的就業을 촉진할 수 있도록 農機械化나 農地流動性 제고 등의 農業構造改善政策과 함께農工地區入住業體의 선정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兼業的으로 취업 가능한업종의 우선 입주와 농번기에 취업농민들에 대한 특별휴가제도의 도입권유 등의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희망자들의 희망하는 就業方法, 즉 離村就業을 할 것인지 혹은 집에서 출퇴근할 것인지 문의한 결과 취업희망자들의 97.3 %가 출퇴근 취업을 희망하고 나머지 2.7 %만 이촌하여 기숙사생활 등을 통해취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취업희망자의 性別 및 婚因狀態나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다. 就業을 希望하지 않는 理由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270호의 가족 1.115명 중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너무 많아서 공업인력으로 의미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15~59세 연령층의 취업대상자는 714명이 된다. 이들 중농공지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150명으로 나머지 565명은 농공지구에 취업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취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농공지구 취업을 취업을 기괴하는 이유는 <表 4 - 17 >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學校나 軍문제 또는 家事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52.9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직업에 만족하기 때문이 20.2 %, 農事가 많아서 타부문에 취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 14.3 %, 그밖에 나이가 많거나 健康이 좋지 않아서나 賃金이 싸기 때문이라는 등의 응답을 하고 있다.

이를 性別 및 婚因狀態別로 살펴보면 男子의 경우 學校 또는 單문제 (32.8%) 와 農事가 많아서(21.2%) 및 현직업에 만족하기 때문(28.0%이라는 이유가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女子의 경우에는 家事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다는 응답이 56.3%로 지배적이다. 또한 혼인상태별로는 未婚者들의 경우 대게 學校 또는 軍문제 때문에 취업

表 4-17 性別 및 婚因狀態別 非就業希望 理由

單位:人.%

					4. 反 . 八 , ル
事 由	性	別	婚因	狀態	8+
	男	女	未 婚	結 婚	f f f
農事가 많아서	66(21.2)	15 (5.9)	3 (1.5)	78 (21.0)	81 (14.3)
技術이 없어서	2(0.6)	1 (0.4)	-	3 (0.8)	3 (0.5)
賃金이싸기때문에	20(6.4)	4 (1.6)	7 (3.6)	17 (4.6)	24 (4.2)
學校또는軍문제	102(32.8)	47 (18.5)	148 (76.3)	1 (0.3)	149 (26.4)
家事를돌봐야기에	7(2.3)	143 (56.3)	7 (3.6)	143 (38.5)	150 (26.5)
나이가 많아서	16(5.1)	14 (5.5)	2 (1.0)	28 (7.5)	30 (5.3)
健康상의 이유로	9(2.9)	3 (1.2)	1 (0.5)	11 (3.0)	12 (2.1)
체면 때문에.	2(0.6)	-	_	2 (0.5)	2 (0.4)
現職業에 만족	87(28.0)	27 (10.6)	26 (13.4)	88 (23.7)	114 (20.2)
計	311(100.0)	254 (100.0)	194(100.0)	371(100.0)	565(100.0)

表 4-18 年龄別 非就業希望 理由

單位:人,%

					_		
年龄	15 ~	20 ~	25 ~	30 ~	35 ∼	40 ~	
事由	19	24	29	34	39	59	計
農事가 많아서	_	1(1.3)	2(5.7)	7(11.7)	3(7.5)	68(26.0)	81
技術이 없어서	-		_	1(1.7)	1(2.5)	1(0.4)	3
賃金이싸기때문에	1(1.1)	2(2.7)	5(14.3)	7(11.7)	2(5.0)	7(2.7)	24
學校生七軍是제	88(95.7)	51(68.0)	10(28.6)	-	_	-	149
家事 를돌 봐야기에	-	5(6.7)	11(31.4)	24(40.0)	18(45.0)	92(35.1)	150
나이가 많아서	_	-	-	_	_	30(11.5)	30
健康상의 이유로	_	1(1.3)	-	1(1.7)	3(7.5)	7(2.7)	12
체면 때문에	_	-	-	-	_	2(0.8)	2
現職業에 만족	3(3.3)	15(20.0)	7(20.0)	20(33.3)	13(32.5)	56(21.4)	114
<u> </u>	92(100.0)	75(100.0)	35(100.0)	60(100.0)	40(100.0)	262 (100.0)	565

하지 못한다는 것이 76.3 %로 대부분이며 旣婚者들의 경우 家事를 돌봐야 하기 때문(38.5 %) 과 현직업에 만족(23.7 %), 農事가 많아서(21.0%) 각기 농공지구 취업이 곤란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農工地區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주민들이 非就業理由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表 4 - 18 〉에서 알 수 있듯이 25세 미만의 경우 學校 또는 軍문제 때문에 취업할 수 없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반면 비교적 고령층으로 가면 家事를 돌보거나 현 직업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農事가 많거나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곤란하다는 응답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職業別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表 4 - 19〉와 같이 공무원이나 회사원 및 기타 2~3차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 막노동자들은 임금이 낮고, 家事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무직자들은 가사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나 군문제 때문에 각기 취업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表 4-19 現職業別 非就業希望 理由

單位:人.彩

聯業	農業	공무원및	商業製造 業以서비 스業自營	막노동	無職	學生	âĦ
農事가 많아서	81 (28.5)	_	-	-	_	_	81
技術이 없어서	2(0.7)	_	-	-	1(1.7)	-	3
賃金이싸기때문에	16(5.6)	1(2.3)	2(6.5)	2 (25.0)	3(5.2)	-	24
學校또는軍문제	4(1.4)	-	-	-	5(8.6)	150(99.3)	149
家事를돌봐야기에	105(37.0)	1(2.3)	2(6.5)	3 (37.5)	39(67.2)	-	150
나이가 많아서	23(8.1)	-	1(3.2)	1 (12.5)	5(8.6)	-	30
健康上의 이유로	8(2.8)	-	-	-	4(6.9)	- 1	12
체면 때문에	1(0.4)	-	-	_	1(1.7)	-	2
現職業에 만족	44(15.5)	41 (95.3)	26(83.9)	2 (25.0)	_	1(0.7)	114
<u></u>	284 (100.0)	43(100.0)	31(100.0)	8 (100.0)	58 (100.0)	141(100.0)	565

여기서 특히 農業從事者의 경우를 보면 전체 취업대상자 360명 중에 21.1%인 76명이 취업을 희망하고 나머지 284명은 취업을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들에게 非就業事由를 문의한 결과 家事를 돌봐야 하기 때문(37.0%) 과 農事가 많아서(28.5%) 및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기 때문(15.5%) 등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밖에도 나이가 많아서(8.1%), 賃金이 낮기 때문(5.6%) 기타 健康이나 學校(또는軍)문제,技術不足 및 체면 때문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등의 이유가(5.3%)이들의 농공지구 취업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農工地區 就業이 제약되고 있지만 앞으로 與件이 변화함에 따라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學校나 軍문제에 의한 제약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히 해소될 것이고 그 외에도 農事가 많은 경우는 農機械化를 통한 농업노동력투입의절감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부족과 저렴한 임금은 技術訓練을 통한 勞動生產性을 높임으로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高級人力化 할 수 있을 것이다.

3. 地域住民의 就業 擴大方案

농공지구 개발이 그 본래의 목적인 農外所得 증대를 통한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특히 농가구원의 農工地區 就業制 約要因을 제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技能訓練과 취업알선이 병행됨으로 써 실제 많은 지역주민들의 농공지구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技術訓練과 취업알선 및 기타 지역주민의 공장취업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농공지구 취업을 기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 인 農業勞動力의 부족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최소한 農事가 많 아서 농공지구에 취업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주민(미취업희망자의 14.3 %) 들의 농공지구취업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아시아 몬순기후대에 속하는 우리나라 農業은 이앙기와 수확기의 노동수요 편재로 말미암아 농번기와 농한기가 확연히 구분 됨으로써 노동수요가 많은 농번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만 농한기에는 쉬고있는 수많은 潛在失業者들이 있는 바 이 같은 노동의 계절적 수요를 완화시킬수 있는 農業構造改善과 農業機械化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하여서 제안할 수 있는 시책은 農工地區開發地域을 대상으로 이앙기와 수확기 보급 촉진 등과 같은 農機械化事業을 실시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농공지구 취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판매 또는 임대할 경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므로써 農外就業을 확대하는 한편 專業的 農家의 경영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이 실제 工場就業에 필요한 技術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습득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농공지구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당해 지역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31.3 %가 他地域에서 모집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데 비해 나머지 68.8 %은 현지 주민들을 훈련시켜서 채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현재 道農民教育院을 통한 직업훈련방안을 구상중에 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업주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기능인력의 종류 별로 수요와 기능습득에 필요한 기간을 파악해 본 결과 〈表 4 - 2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습득기간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公共職業訓練院, 특히 道農民教育院의 경우 道廳所在地에 1개소 정도 입지하고 있음으로써 실제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훈련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技術習得에 필요한 기간이나 難易度에 따라 많은 훈련장비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高級技術과 中級技術 그리고 社內 見習工으로 훈련가능한 下級技術로 구분하여 高級技術의 경우 전문직업훈련원에, 中級技術은 道農民教育院을 통해 그리고 單純下級技術에 대해서는 社內에서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방안을 制度的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表 4-20 貸工地區 入住獎股의 所要 技能人力의 種類斗 規模 및 技術 習得期間

習	得	期	[6]	1	年	以	上	習	得	期	間	1	年	未	滿
種			類		規	模	(名)	種			類	規		模	(名)
선			ધ્		79 (28.9)	ם			싱		305 (27.8	;)
절			삭		42 (15.4)	직			수	2	275 (25.0)
፷			장		36 (13.2)	봉			제	2	250 (28.8)
8			접	İ	30 (11.0)	양	말	즤	굥	1	.00 (9.1)
7	주	파	공		25 (9.2)	기	계	<u>₹</u>	립		71 (6.5)
<u> </u>	;	레	스		28 (10.3)	전			자		54 (4.9)
연			삭		17 (6.2)	전	フ	}	균		43 (3.9)
급			형		16 (5.9)								
		計			273 (100.	0)		Ē	t		1,0	98 (100.	0)

資料:農工地區 入住業體會社에 대한 意思調査.

訓	紋	方	法	業	體	數	構	成	比	
事業體内。	〕見習工	으로 社	内訓練		73			91.3		
公共訓練機關에 委託訓練					6			7.5		
際近學校에 夜間職業學校附設					1			1.2		
	計	•			80		1	00.0		

表 4-22 較獎馴燉機器 및 訓練實態

	訓練の機関の数	職業數	186 年 訓練計団	備考
公 職業訓練管理工團	25	36	13,640	산업별공통수요직종으로 社内訓練 이 어려운 금형・기계공작・용접등
共政府機 關	36	28	7,052	재소자 및 재직자능력배양훈련
迦 地方自治區體	11	21	2,595	농기계훈련 및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편물 봉재 등
Ø KNOP	6	5	345	美 8 軍한국인종사자 전직훈련
事業體內訓練	179	84	22,830	300 인이상 사업체의 자체수요를 위한 선반·전자·건축 등 업종
認定訓練	52	35	16,054	공공이나 사업내훈련 곤란한 조리· 인쇄·통신 등
計	309	168	62,516	_

다행히 入住業體 조사에서 〈表 4 - 21 〉과 같이 業體 스스로가 社內訓練을 선호하고 있어서 社內訓練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모든 훈련책임을 업체에게만 부담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절한 지원, 즉 事業體內 訓練費 補助나 이에 상당하는 誘引策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에 과연 누구를 직업훈련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데 이는 지역주민으로써 農工地區就業을 희망하는 者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農家口員 중에서도 장래 兼業이나 轉業을 희망하는 零細小農을 우선적으로 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農業構造改善과 연계시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모		집		유		법	용	답	업	체	ተ	구	성	ㅂ]
											업체			96
벽						뵨			22				27.5	
र्हो-	n)	에	牵	천	의	뢰	İ		20				25.0	
ス	역	有	志	의	혛	조			19				23.8	
신	문					J			12				15.0	
기						EF			3				3.8	
***************************************			£†						76				100.0	

한편 농공지구 입주업체들이 종업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表4 - 23 >과 같다. 즉, 현재 벽보를 붙이거나 학교나 지역유지들의 추천 등으로 종업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人力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입주업체나 취업희망자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당면한 주요과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농공지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현지 주민들의 취업을 일정 수준까지의 무화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농 공지구의 노동력을 원활히 조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도 住民就業擴大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第5章

要約 및 政策建議

1。要 約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우려속에 추진되어 온 農村工業開發政策의 실태를 살펴보고 農工地區開發事業의 推進現況과 問題點을 把握한 후 特히 農工地區 開發의 當面問題가 되고 있는 適正規模의 決定과 位置選定 및 農村地域의 技能人力 需給方案에 관한 검토를 통해 農村工業과 農工地區開發의 보다 效率的인 推進方案을 모색해 본 것이다.

主要 研究結果를 要約하면 그동안의 農漁村副業團地나 새마을工場建設事業 및 그밖에 각종 地方工業團地造成事業의 積極的인 推進 結果 農村工場은 1970 年의 7,839 個業體에서 1984 年에는 10,712個業體로 年平均 2.26 % 씩 增加하였으며,이와 함께 같은 期間 農村工業 部門의 從業員과 生產額도 각기 年平均 9.56 % 및 12.52 %씩 成長함으로써 從業員과 生產額增加率의 境遇 오히려 都市工業部門의 成長率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984年 現在 全體 事業體數의 25.8% (10,712 業體),취업자수

의 21.2% (496.738名) 및 生產額의 18.5% (13.205億원)를 農村工業 부문에서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工業開發의 地域別 분포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工場數, 面積 屬當 生產額 및 工業團地,人口 千 名當 취업자수를 綜合한 工業集積度를 分析한 結果 大都市 및 구미, 창 원, 울산, 포항, 여천등 大規模工業團地가 造成된 일부 거점도시와 그 隣近地域을 中心으로 工業開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其他 農村地域과는 상당한 開發隔差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農村地域의 工業開發이 相對的으로 저조한 이유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都市地域에 비해 社會間接資本施設과 金融機關의 未發達, 農村地域의 技能人力不足 및 支援行政機關과의 接近性 문제 등 전반적인 工業立地條件의 落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이 밖에도 工業開發關聯政策 특히 工業立地政策과 關聯하여 制度的으로 農村工業開發을 狙害한要因도 무시하기 어렵다.

즉,고동안의 工業開發의 一環으로 推進된 工業團地造成의 경우 전체 造成團地 70個의 30%(21團地) 및 造成面積과 분양면적의 16.0%와 15.7%만이 農村地域에 立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種 土地利用關係法規에 의해서 工場用地의 確保가 지나치게 規制되고 있으며 工場設置節次가 複雜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부분의 農村工業이 自由立地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自由立地工場에 대한 支援이 工團立地에 비해 크게 未治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農村地域의 商工行政機能이 미미하여 제대로 그 役割을 遂行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순수한 農村工業開發事業의 경우 상당한 성과를 얻고는 있으나 대부분 개별분산 立地하여 農村地域 立地의 不利性을 국복하지 못하고 많은 業體들이 事業을 취소하거나 休業狀態에 있다. 특히 農漁村所得額開發促進法에 의해 새로이 遂行되고 있는 農工地區開發事業의 경우 당초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많은 業體들이 入住를 希望함에 따라 1986年末에는 32個 市郡에 34個의 農工地區가 指定될 豫定으로 있다. 그러나 워낙事業에 着手한 期間이 짧아서 아직까지 推進體制, 規模決定과 위치선정,

附帶施設의 範圍, 業體의 誘致 및 事業性 檢討, 調査·設計方法 등 좀더補完, 整備해야 할 몇가지 問題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農工地區의 規模決定과 位置選定 및 農村地域의 技能人力需給 등은 시급히 解決해야 할 政策課題들로 본 硏究에서는 여기에 대한 檢討를 하였는데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먼저 農工地區의 規模의 경우 大規模로 造成하는 것이 單位當 造成原價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치 못하고 있으며, 市郡內에서 집단화된 工業用地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農地나 林地의 과도한 잠식우려가 있고, 또한 地域內部에서 거점개발 형태가 되기 때문에 均衡開發의 저해와 현지 취업자들의 출퇴근문제를 야기하게되고 아울러 농공지구개발사업의 신속한 着手를 제약하게 된다. 이는 市郡에서 농공지구의 規模를 대개 2~3만평규모로 2~3개치구의 개발을 希望하고 있는 것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농공지구의 위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用地確保가 용이하고, 개발사업비가 적게 들며, 交通이 편리하고 勞動力確保가 용이한 곳에 선 정하고 있으나 사업비와 관련해서 보면 농촌중심도시에 인접할 수록 用 地買收 및 補償費가 비싸져 坪當事業費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계는 서울과의 거리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이 경우 추가된 사업비 부담보다는 立地條件의 유리성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짐으로써 首都圈 및 대도시 인접지역에서 농공지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구조성에 대한 정부의 보조도 서울서부터 거리가 먼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고 서울 또는 대도시에 인접된지역에서 더 많은 보조를 받는 불합리한 지원형태가 나타났다.

한편 농촌지역 공업노동력 수급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력수요 측면에서 農工地區入住業體의 경우 업체당 평균 105名의 종업원중 75.1%인 79명을 현지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다. 그중 비교적 高級技術을 요하는 관리사무직, 기술자 및 기능공의 경우 현지 주민 고용비율은 49~63%인데 비해 반숙련공이나 단순노무자는 82~88%정도를 현지에서 조달

할 計劃으로 있어서 농촌지역공업도입에 따른 노동력수급과 관련된 一次 的인 정책과제는 취업희망 노동력의 發掘 및 이들에 대한 技術訓練이라 하겠다.

또한 供給測面에서 주민들의 농공시구 취업의사를 분석한 결과 농공지구에 취업을 希望하는 사람은 地域人口의 13.5%로 15~59세의 취업대상연령층 인구의 21.0%가 취업을 희망하였는데 이들은 농공지구와의 거리 보다는 현재의 직업이나 경지규모 등 생활수준의 정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농촌지역의 공업노동력 수급분석을 종합하면 노동력의 절대량이란 점에서는 수요와 공급 모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자격증이나 과 거 공장 취업경험이 있는 등 필요한 기능과 자격을 갖춘 노동력이 크게 부 족하여 이들에 대한 기능훈련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2。政策建議

이상의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문제들을 중심으로 농촌공업과 農工地區開發의 效率的인 추진을 위한 政策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첫째, 工業立地 次元에서 공업개발에 관한 각종 制度整備와 空間的인工業再配置計劃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工業團 地造成施策과 首都閥 및 大都市 工業의 지방분산시책 그리고 각종 中小企業育成과 農村工業開發施策에 관련된 제도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立地 차원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공업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 및 농촌공업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비단 농외소 득증대를 통한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國土의 均衡開發과 농촌인구의 現地定着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效果的인 방법중의 하나가 곧 농촌공업개발을 통한 균형적인 취업기회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상의 공업재배치를 통한 지방 및 농촌공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工業立地條件에서 오는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들 地域立地業體에 대해 稅制, 金融支援을 包含한 각종 지원혜택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의해상당히 정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농어촌부업단지, 새마을공장 건설 등 관련사업 및 수의계약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규와는 상호조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있다.

세째, 農工地區開發과 관련하여 工業開發程度別로 각기 支援혜택을 차등화함으로써 工業過密地域의 추가적인 개발을 억세하는 한편 低開發 및 落後地域의 開發을 促進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第Ⅱ章의 〈表 2 - 14〉에서와 같이 工業集積度分析 결과를 기준으로 工業過密地域, 工業開發地域, 工業低開發地域 및 工業落後地域으로 區分하여 工業過密地域(首都 圈, 大都市 및 人口 20萬以上地域 包含)은 農工地區 開發對象地域에서除外하고,工業開發地域의 경우 비교적 혜택이 적은 特別 隨時指定만 하고 그밖에 工業低開發 및 工業落後地域에는 〈表 5 - 1〉과 같이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市地域은 20萬坪, 郡地域은 10萬坪까지 開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農工地區開發 上限規模를工業開發地域에는 10萬坪까지로下向 조정함으로써 규모에 의한 차등화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5 - 1 工食開報 程度別 瓜工地區 支援의 登碎化 方琛

工業開發地域:特別隨時指定	工業低開發地域:一般指定(1)	工業落後地域:一般指定(1)
	・農工地區造成을 目的으로	
	土地贩賣時 讓渡所得稅	・左同
	减免	
		・用地買收 및 施工費 補助
帶施設費 全額 地方費	國費補助, 80 %融資)	40%(60%融資)
融資	・附帶施設費(100%國費補助)	
•金融支援(施設3億,運	•金融支援(施設3億,運營	・金融支援(施設5億,運營
營1億)	1億)	1億
・税制支援(國稅部分만)	・税制支援(國税 및 地方税)	・左 同
• 代替農地造成費 免除	・左 同	・左 同
・行政節次의 簡素化 및		
土地利用 規制 緩和	・左 同	・左同
		L

[□] 内는 調整部分임.

네째.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원활한 노동력공급과 지역주민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技能訓練을 强化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농공지구 취업의사를 가진 轉業希望者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많은 시설과 비교적 장기간의 훈련을 요하는 기술의 경우 전문직업훈련원에, 단 순기술훈련은 社內見智工으로,그 밖에 중간기능인력은 道單位 農民教育院 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광지 구 입주업체선정시 이들 지역주민들의 농공지구 취업을 의무화하고,이 경 우 적절한 社內訓練費補助나 租稅减免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마지막으로 市都行政部署에 기업측이 요구하는 인력과 지역 주민들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상호 알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 는 노동력수급 알선기구를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노동력수급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농촌 현지 주민들의 취업이 전제되지 않은 농촌공업과 農工地區 開發은 단순히 都市公害의 地方移轉 이상의 큰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 이다

參 考 文 獻

江原道、「江原道 綜合開發計劃」, 1983. 姜泰景。"農村工業導入斗 農業構造改善策。"「產業經營研究所 論文集」, 啓明大學校、 제 10 社、 pp .11 ~ 28, 1979. 建設部、「建設統計便覧」、1983. 經濟企劃院、「鑛工業 統計調査報告書」、1984. 經濟企劃院,中小企業振興公團、「農工地區施策事業關聯行政便覽」 1986. 國土開發硏究院、「國土開發基盤의 擴充」(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 1982. _____,「大單位 施設物의 人口影響 評價基準研究」,1985. ____,「 地方工業開發立地計劃調査 」,1980. ____, 「人口地方定着을 爲한 工業立地計劃硏究」, 1982 ___, 「土地利用適正化 方案 硏究」,1985. 金祥基, "工業立地의 地方分散化가 地域社會에 미친 效果. " 「새마을운동 論門集」. 제 3 집(中). pp.431 ~ 462,1980. 金珠郁外, 「農村職業訓練機關의 現況과 問題點」, 研究報告 38, 韓國農村 經濟研究院。 1981. 內務部, 「地方定住生活圈의 設定 및 開發에 關한 硏究」, 1981. ____, 「全國地方工業適地 案內書」, 1977. ,「韓國都市 年鑑」,1983,1984. 農業振興公社,「農漁村所得源開發關係資料」,1984. 農協中央會、「農漁村副業團地育成研紹會 主題發表」。 1986.

大韓國土計劃學會編. 「都市計劃便覽」英志社。 1983.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타, 「技術都市建設의 方向」, 1986.

劳 <u>罗腮,上職采訓練事業推進現况</u> 」,1986.
商工部,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工場立地案內」,1986.
商工部,韓國產業開發研究所,「工業立地原單位 調査」, 1979.
,「工業團地現況」, 1984.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工場立地案內」,1986.
柳炳端外「農外所得增大를 위한 綜合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82.
柳昌馨,「工業立地論」,營雪出版社,1977.
李桐弼, "農工地區開發의 長期構想과 效率的⊙ 推進方案,"「農村經濟」,
제 8 권 제 1 호, 1985.
, "農村工業開發計劃樹立의 節次의 方法,"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6.5
, "農村工業의 規模,性格 및 成長分析,"「農村經濟」, 제 9 권 제4호,1986.
李質鉉, "새마을工場이 地域經濟 및 農村所得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조
사연구, "「새마을운동 硏究論文集」, 제 1 권(下), pp.397 ~ 423,
1978.
李正模,「工業地方分散化의 波及效果」,研究報告3,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李熙悅,"韓國工業의 意思決定에 관한 硏究,"「地理學論叢」,第9號, pp.41-
58,1982.
全經聯外,「工場建設의 圓滑化들 위한 工業立地 및 配置關係法律의 整備
改編方案 」,1986.
鄭英一, "韓國農村工業化의 條件, 進路 및 그 展望,"「農業政策研究」,
제 8 권 제 5 호, 韓國農業政策學會, 1981.
, "開放經濟下의 農政의 課題, "「農業政策研究」,韓國農業政策學
會, 제 13 권 제 1 호, pp.113-126. 1986.
中小企業銀行,「中小企業論集」,第1集、1970.
中小企業振興公團, 「中小企業의 協同化 및 保護領域에 關한 硏究」,
1, II, 1983.
,「 1985 年 事業案內書」, 1985.

,「中小企業關係法規」, 1984.
, 「中小企業者가 알아야 할 關聯稅法」, 1984.
——— 崔洋夫, "農村人力의 農外就業可能性과 就業類型分析," 「農村經濟」,
제 2 권제 4 호, pp.51 ~ 64,1979.
中間報告書,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8.
,「農村工業의 問題點과 波及效果」,第1次IBRD 借款事業評價研
究 最終報告書,韓國農村經濟研究院,1979.
"農村工業의 概念과 農村工業開發의 意味,"「農村經濟」,제 3
 면 제 1 호, pp.33 ∼ 47,1980.
, 「農外所得政策의 基本問題의 새로운 接近」, 硏究資料, 韓國農
村經濟研究院, 1981.
제 10 권 제 1 호, 1983.
, 李桐弼, 「農工地區開發의 方向과 政策課題」, 研究報告 82,1984.
· · · · · · · · · · · · · · · · · · ·
1984.
黃載璣, 우리나라工業의 地域別 構成,「地理學」,第6號, pp.37 ~ 50,1973.
黃弘道, 「地方工團에의 勞動供給圈과 周邊 農村의 雇傭效果」, 研究報告
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韓國工團研究所,「韓國工團總覽」, 1985.
韓國鑑定院,「土地時價調査表」, 198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村所得源開發 促進方向 」 政策協議會시리즈 20,
1984.
, 「農村家內工業의 現況과 問題點」, 1980.
,「農村中心圈開發의 理論과 指針」,1978.
, 「農工地區開發의 效率的인 推進方案」,政策討議시리즈 30., 1986.
, Rural Idustrialization in Korea: A Critical Assessment, 1981.

- Anderson, Dennis and Mark W. Leiserson, Rural Enterprise and Nonfarm Employ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1978
- A.P.D.C, The Rural Non-Farm Sector in Asia, Kuala Lumpur, Malaysia, 1985.
- A.P.O, Approaches to Rural Industrialization-Some Experence, Tokyo, 1983

 August, Lösch, The Economics of Location, John Wiley & Sons, New York, 1967.
- Choe, Yang-Boo, Rural Idustrialization in Korea, Problems and Policy
 Issues, Korea Rural Economics Instute, Seoul, 1979.
- Hamilton, F & E . IAN, Spatial Perspectives on Industial Organization & Decision-making, John-Wiley & Sons, 1974.
- Howard, Pack and Larry E. Westphal, "Industrial Strategy and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Development Ecomomics, Vol. 22, pp.87-128, 1986.
- Kada, RyHei, "Off-Farm Employment and Farm Adjustment: Implications of Part Time Farming for Rural Development,"
 Contributed Paper, Seventeenth Inter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Economists, Sept. 3-12, 1979.
- Kaldor, Don, "Rural Industrializilion: A Policy Instrument for Rural

 Development," Papers of the Rural Community Development Seminar: Focus on Iowa, Ames: Iowa State

 Univ.pp.C1-C19, 1972.
- Meyer, Richard L, & Donald W. Larson, "Rural Nonfarm Employment:

 The Recent East Asian Experience,"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 3, No. 1, pp. 91-112, July 1978.
- Part, Sam-Ock, Location Change & Manufacturing: A Conceptual Model
 & Case Studies, Athens, Georgia, 1981.
- Privalovskaya, G.A., "General Tendencies of Development of Territorial Production Complexea," Soviet Geography: Review

- & Translation, Vol. XX. pp.82-96, 1979.
- Ronald, G. Ehrenberg & Robert S. Smith,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Scott, Foresman and
 Company, Illinois, 1982.
- Richard, Cornes, Charles F. Mason & Todd Sandler, "The Commons and the Optimal Number of Firm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1, pp.641-646, 1986.
- Sigurdson, Jon, Rural Industrialization in China, Cambridge, Massachusette, Harvard Univ. Press, 1977.
- Staley, Eugene & Richard Morse, Modern Small Industry for Devel oping Countri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5.
- (UNID),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ndustrializantion and Rural Development, New York,

 UN. 1987.

研究報告 133

農村工業과 農工地區 開發의 效率的인 推進方案

1986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鎭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4 - 102

登録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刷 事洋文化印别敬式會科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斡旋 및 複製는 辩함.